2025
10
Vol.352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AGI 시대의 불가피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욱 중요해진 정부 재정의 역할
김정훈

현안분석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경훈

정책토론리포트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국에 관세 부과 경고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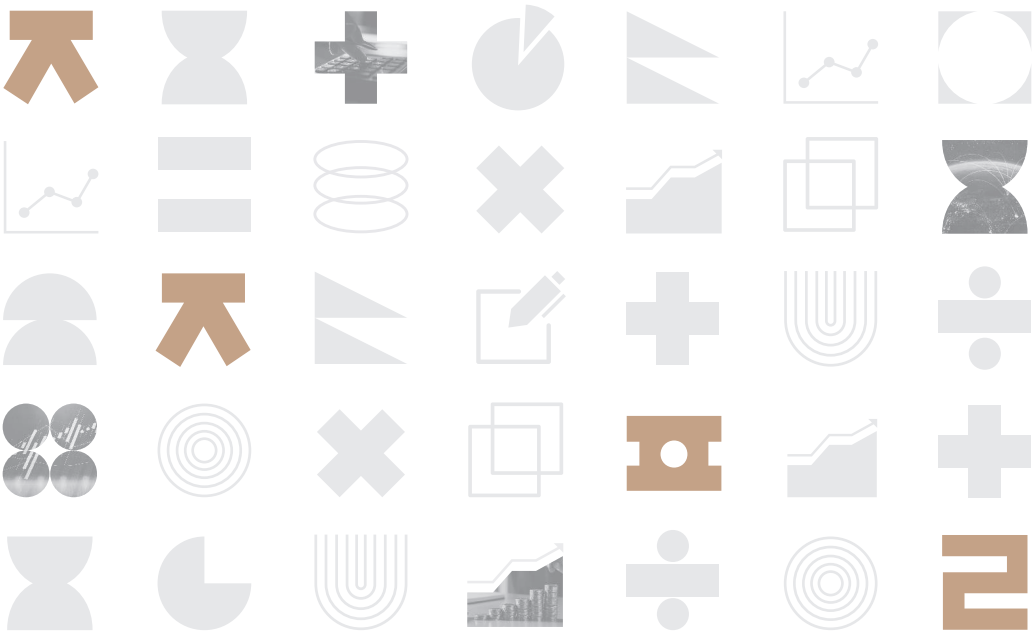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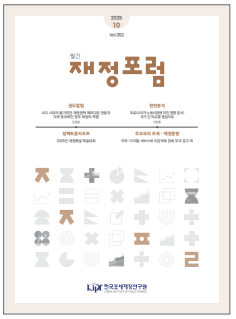

월간 재정포럼
2025년 10월 20일 발행
통권 제35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행 인	이 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 집 간 사	조혜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편 집 · 제 작	길민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AGI 시대의 불가피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욱 중요해진 정부 재정의 역할

김정훈 |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현안분석

10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경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토론리포트

48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76 미국-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국에 관세 부과 경고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AGI 시대의 불가피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욱 중요해진 정부 재정의 역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junghun.kim@fpi.kr

AGI 시대의 불가피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욱 중요해진 정부 재정의 역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2022년 11월 chatGPT가 발표될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경제활동에 미칠 영향이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은 대량 실업이 불과 10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2025. 9. FT), 스탠퍼드대학교의 에릭 브리뇰프슨 교수는 청년 개발자 일자리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7월 사이에 20% 하락했음을 보고했다(2025. 8.).

제프리 힌튼의 견해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는 2025년 초 발표된 논문에서 AI에 노출된 일자리가 전체의 약 5%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세모글루 교수도 일자리의 완전 소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AI의 제한적 영향을 향후 10년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고, 인공일반지능(AGI)이 20~30년 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적어도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AI가 GDP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형태로 현실화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경제학의 대표적 학자인 안톤 코리넥 교수가 2024년 발표한 NBER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AI의 발전이 GDP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AI 시대에 과업(tasks)이 자동화되지만 새로운 과업이 계속 탄생하는 경우, 시나리오 2는 과업의 분포가 유한하여 20년 내에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나리오 3은 과업의 분포가 훨씬 더 유한하여 5년 내에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림 1]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GDP와 일자리의 궤적이 나타나 있는데,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 각각 20년 후 및 5년 후 일자리 소멸이 발생한다. 시나리오 1의 경우 AI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기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림 1 **AI 경제의 세 가지 시나리오(GDP와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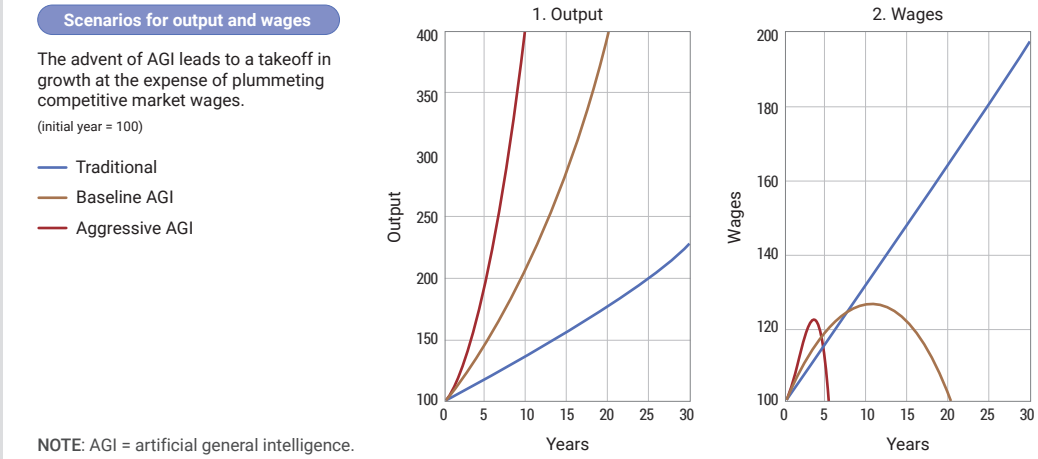

출처 Korinek and Suh(2024)[1)]

이 결과는 제프리 힌튼이 주장하는 AGI 현실화 및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라는 이론적 가정하에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 경제의 향후 궤도는 이 세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림 1]은 향후의 재정정책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첫째, 시나리오 1이 현실화되면 AGI에 의하여 근로소득과 GDP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현재 예상되는 1% 수준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AI 덕분에 3%대로 오른다면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 2가 현실화되어 20년 후 일자리가 소멸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과표 역시 소멸한다. 그러나 [그림 1]이 보여주듯이 AI의 발전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면 과세표준도 크게 증가한다. 다만 그 과표는 노동소득이 아닌 기업의 "AI 이윤"에 집중될 것이다. 정부가 이 거대한 AI 이윤을 재정수입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흥미롭게도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AI 기업 부호들 스스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픈AI의 샘 알트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처리능력(compute)의 40%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1) Korinek, Anton and Donghyun Suh, 'Scenarios for the Transition to AGI," NBER Working Paper No. w32255, 2024.

보편적 기본자산(Universal Basic Wealth)을 제안하였다. [그림 1]의 시나리오 2와 3처럼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재정정책 기반이 노동소득에서 AI 이윤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

셋째, 시나리오 2가 현실화되어 20년 후 일자리가 소멸한다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초저출산이 가져올 "아이들이 많지 않은 세상"의 정서적·사회적 충격은 크다. 그러나 일자리가 사라진 AGI 시대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국 금융감독청장을 지낸 아데어 터너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2025. 10.) 기고문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나리오 2가 현실로 다가오면 인구를 늘리는 재정지원보다 자연 출산율을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AGI 고도화가 임금과 GDP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유토피아가 펼쳐지면 문제없지만, 일자리는 소멸하고 GDP만 증가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처럼 AI 기술의 발전으로 GDP가 크게 상승하는 한(시나리오 1, 2, 3), 재분배와 재정 유지가능성의 확보가 현재보다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20년 후 GDP는 매우 높지만 노동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AI 이윤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어떤 재정정책 경로를 통해 가야 하는가?

한국은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1990년대 일본이 직면했던 구조적 총수요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출 감소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내수 부족이 총수요를 장기적으로 약화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재정적자 기조를 30년 넘게 유지하였다. 2010년대부터는 중앙은행이 국채의 50% 이상을 보유하며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현재 국가채무 GDP 비중이 250%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의 경제적·사회적 구조는 약 20~30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과 비슷하여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지난 30년은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AGI 고도화가 임금과 GDP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유토피아가 펼쳐지면 문제없지만, 일자리는 소멸하고 GDP만 증가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재정 기득권 구조의 혁신에 성공하면, 눈부신 AI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와 재정이 일본형 침체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2015년 AER에 발표한 '수요 부족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대표적 사례이다. 서머스의 연구는 1939년 알빈 한센의 인구감소에 의한 경기침체 연구를 이어받은 것으로, 두 연구 모두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기까지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30년간 지속하여 국가부채의 GDP 비중을 250%까지 올렸는데 이 수준이 바람직한가?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시카고대학의 존 코크레인 교수는 일본의 높은 부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낮은 조세부담률(미래의 높은 담세력), 국가 자산(순부채는 160% 수준), 낮은 이자율 등이 일본의 부채를 유지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250% 국가부채가 바람직한가? 거시경제학 권위자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MIT 명예교수는 일본의 이자율이 오르면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한다. 그는 또한 미국(국가부채 GDP의 120%)도 비판하는데, 미국은 국가부채를 억제하는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재정지출 구조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향후 20년간의 재정정책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AI 시대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총수요 부족과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 및 일정 수준의 국가부채 증가가 필요하다. 만약 AI 기술의 발전으로 GDP 증가율이 높아진다면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다. 셋째, 일본, 미국, 프랑스처럼 국가부채 경로가 유지 불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기득권을 재정수요에 기반한 지출로 전환하는 재정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세수입 비율로 지출을 무조건 보장(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재정 기득권 구조의 혁신에 성공하면, 눈부신 AI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와 재정이 일본형 침체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KIPF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khlee0423@kipf.re.kr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1)]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 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가 내 분석은 각국의 정책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잠재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코로나19의 양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안전망 정책 대응이 뚜렷하게 달랐던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비교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 첫해 동안 나타난 노동시장 결과의 변화를 국가 간에 비교하고, 국제적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별 데이터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기준으로 국가 간 차이를 검토하며, 고용 변화가 직무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근로하지 않는 인구'의 비중을 장기 실업자, 단기 실업자, 일시휴직자, 경제활동 비참가자로 나누어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2020년 2분기에는 모든 국가에서 근로하지 않는 인구의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양상은 국가마다 달랐다. 미국은 단기 실업자가 크게 늘었고, 유럽과 호주는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노동시장 이탈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상당 부분 각국의 사회안전망 제도와 정책 대응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가장 컸던 국가들에서는 고학력자와

1) 본 연구는 Breunig et al.(2024)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고학력자의 고용 감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국가 간 차이는 주로 저학력자 및 중간수준 학력자의 고용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저학력자 간의 고용 성과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고학력자의 고용 감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국가 간 차이는 주로 저학력자 및 중간수준 학력자의 고용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중퇴자의 고용 성과가 고졸자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직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속 기간 등 노동시장 내 지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른 고용 격차는 비교적 작았고,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다른 요인을 반영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는 고용 변화가 노동공급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만약 노동공급 요인이 주요했다면 경제활동 이탈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며, 실제로는 고용 상태에 있던 이들의 실직이나 휴직 형태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노동공급 측 반응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전반적인 고용 변화는 노동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면, 대면 업무가 필수적인 직무에서는 고용 감소가 뚜렷하였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노동시장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확진자 수 자체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가 고용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은 확진자 수가 많았고, 호주, 한국, 덴마크, 스웨덴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는 각기 달랐다. 예컨대, 이탈리아나 호주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반면, 한국과 스웨덴은 비교적 완화된 조치를 취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확진자가 많지 않더라도 고용을 줄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의 특성-즉, 대면 상호작용의 빈도와 원격근무 가능성-이 고용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두 특성은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노동시장 결과와 밀접한 연관을 보였으며, 특히 확진자 수가 많았던 국가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충격 속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설문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한 8개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별 대응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직종별 업무 특성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호작용하며 취약집단의 고용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문화·가족구조 등 맥락적 요인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직종별 업무 특성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호작용하며 취약집단의 고용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문화·가족구조 등 맥락적 요인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가장 취약했던 집단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책적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야 할 우선 대상과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장 비용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감염 억제와 경제활동 유지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별 국가 사례의 축적된 결과를 대체하기보다는, 그러한 연구들을 횡단적으로 연결해주는 비교 기반의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범국가적 정책 설계와 국제 공조 논의에 실증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다.

Ⅱ 배경

1. 선행연구

코로나19는 노동시장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왔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국가별 정책 대응의 차이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둘째, 인구통계학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의 이질적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 셋째, 직무 특성을 계량화하고 이를 노동시장 성과와 연결짓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국가별 정책 대응

코로나19 초기 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경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거리두기 조치는 서비스업, 소매업, 운송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인구통계, 교육, 직업별 임금 및 고용 격차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불평등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활동을 제한하며, 노동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Bartik et al., 2020; Chetty et al., 2020; Coibion et al., 2020; Gupta et al., 2020; Farboodi et al., 2021; Goolsbee and Syverson, 2021).[2)]

대부분의 연구가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수의 국가에서 경제 활동과 공중보건 사이의 상충 관계를 조사한 논문도 있다. 예를 들어, Andersen et al.(2020)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Aum et al.(2021b)은 한국과 영국을, Fajgelbaum et al.(2021)은 한국과 미국을 연구한다. 이들은 전면적인 봉쇄가 건강 위험 감소라는 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최적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상대적으로 질병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엄격한 초기 봉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3)]

여러 논문에서 정책과 노동시장 간 연관성을 국가별로 비교하려고 시도했다. Soares and Berg(2022)는 7개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를 분석하여 임금보조 정책이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Elgin et al.(2023)은 165개국의 노동시장 대응 정책을 분류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용 보호 및 소득 지원 정책이 경제 회복을 촉진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 집단 간 이질적 효과

기존 문헌에 따르면 이전의 경제 및 공중보건 위기는 노동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의 사회 계층화 패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Zissimopoulos and Karoly, 2010; Dudel and Myrskyla, 2017; Cheng et al., 2019; Killewald and Zhuo, 2019; Yasenov, 2020).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인구통계, 교육, 직업별 임금 및 고용 격차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불평등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Adams-Prassl et al.(2020)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실직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Alstadsater et al.(2020)은 노르웨이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과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큰 충격이 집중되었음을 보고하였다.

2) 이 논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량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기법을 사용했다: ① 인구의 이동성 측정, ② 관찰된 감염 확산에 기반한 프록시, ③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이행 지표(Brodeur et al., 2021).

3) Fajgelbaum et al.(2021)은 이러한 공간적 타기팅 전략은 실질 소득 손실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Aum et al.(2021b)에 따르면 적극적인 검사와 효과적인 바이러스 추적은 전면적인 봉쇄보다 감염을 줄이고 경제적 혼란을 덜 초래했다. Andersen et al.(2020)과 Aum et al.(2021a)는 대부분의 경제 위축이 정부의 봉쇄 정책과 무관하게 바이러스에 대한 개인의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Bluedorn et al.(2021)은 여성의 고용 감소가 초기에는 두드러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분석하였다.

Galasso and Foucault(2020)은 12개 OECD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무직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반면, 저교육수준 근로자는 대면 업무 지속 혹은 고용 중단의 가능성이 높았음을 밝혔다. Khamis et al.(2021), Kugler et al.(2023)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초기 충격을 분석하였고, Verick et al.(2022)은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가 특정 계층에 더욱 구조적 타격을 입혔음을 시사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교 휴교가 부모의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Heggeness(2020)와 Garcia and Cowan(2022)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감소와 전일제 근무 가능성 하락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대학 학위가 없고 원격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부모일수록 영향이 컸다. Forsythe et al.(2020)은 코로나19 초기에 미국 내 대부분 산업에서 구인 수요가 급감하고 실업급여 청구가 증가했으며, 레저, 접객 서비스, 비필수 소매업이 가장 큰 감소를 경험했다고 분석하였다.[4)]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 고용유지율이 높았으며, 감염 노출이 많은 직종이 의외로 고용 안정성을 보인 배경에는 해당 직종의 필수성 여부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 코로나19 기간 중 직무 특성의 중요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구통계학적 그룹 간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직업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Montenovo et al.(2022)은 코로나19 이전 직종 분포와 코로나19 이후 고용 변화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으며, O*Net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택근무 허용 여부와 대면 의존도를 수치화하였다. Beland et al.(2020)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 고용유지율이 높았으며, 감염 노출이 많은 직종이 의외로 고용 안정성을 보인 배경에는 해당 직종의 필수성 여부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코로나19 위기 동안 '최전선' 산업인 필수 소매업은 훨씬 적은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Dingel과 Neiman(2020)는 모든 직업의 재택 근무 가능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를 구축하고 이 분류를 직업별 고용 수와 통합했다. 그 결과 저소득 국가일수록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vdiu and Nayyar(2020)는 원격근무(RW) 가능성과 대면(F2F)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공급이 직종별로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필수 중요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침을 사용하여 Blau et al.(2020)은 필수 근로자의 특성과 이 그룹의 하위 범주인 최전선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Leibovici et al.(2020)은 대인 접촉이 많은 직종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한국은 초기에 타격을 받았으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가장 낮은 사망률 수준을 유지했고, 호주는 2021년 말까지는 큰 피해를 피했으나 이후 누적 사망률이 상승하였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중간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2. 코로나19와 정책 대응

8개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대응하였다. 이탈리아는 2020년 2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대응에 나섰으며, 2023년 2월까지 인구 백만명당 3,188명의 누적 사망률을 기록했다.[6] 스페인은 그 수치를 빠르게 추월했고, 미국은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백만명당 3,278명). 한국은 초기에 타격을 받았으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가장 낮은 사망률 수준을 유지했고, 호주는 2021년 말까지는 큰 피해를 피했으나 이후 누적 사망률이 상승하였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중간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경제 지원 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는 2020년 3월 초 비필수 산업과 학교의 운영을 조속히 중단하였으며, 스페인은 국경 폐쇄까지 단행했다. 반면, 스웨덴은 제한 대신 자율적인 권고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특이한 사례로 분류된다. 한국 역시 전면적인 봉쇄 없이 집중 검사 및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였고, 집단감염 발생 시 시설 폐쇄를 단행하되, 사적 모임에 대한 전국적인 제한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지 않았다.[7] 일부 정부 및 민간 시설이 집단 감염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지만,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를 의무화한 적이 없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각 주에서 셧다운 및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호주는 국경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일부 주에서는 장기 봉쇄 조치를 시행하였다.[8]

경제 지원 측면에서는 고용유지제도(JR)와 실업급여(UB)가 핵심 정책으로 작동하였다. JR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게 하였고,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하였다.[9] UB는 실직 또는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완하였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CARES 법은 실업보험을 대폭 확장한 대표적 사례이며,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2,900만명에 달했지만 고용유지제도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프랑스는 JR 수급자가

6) 사망률 정보: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검색일자: 2025. 4. 4.

7) 접촉자 추적 인터뷰는 확진자의 위치 이력 등 기본 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데이터(휴대폰 위치, CCTV 영상, 카드 거래 기록 등)를 수집하여 1차 면담에서 확보한 정보와 교차 확인했다(Shin and Koh, 2021).

8) https://theconversation.com/covid-in-victoria-262-days-in-lockdown-3-stunning-successes-and-4-avoidable-failures-172408, 검색일자: 2025. 4. 4.

9) OECD(2020)의 「COVID-19 봉쇄 기간과 그 이후의 일자리 유지 제도」를 참고

UB 수급자의 두 배에 이르며 대조적인 정책 집행 결과를 보여준다(각각 690만명, 360만명).[10)]

2020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이 집중된 시기로, 분기별 또는 시점별 정책 반응과 노동시장 변화의 상관관계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목적과 부합한다.

Ⅲ 데이터

본 연구는 각국의 정기 노동력 조사(Local Labor Force Surveys)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은 코로나19 이전 정상적인 노동시장 상태(2019년)를 기준선으로 삼고, 2020년 한 해 동안의 코로나19 충격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했다. 특히 2020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이 집중된 시기로, 분기별 또는 시점별 정책 반응과 노동시장 변화의 상관관계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목적과 부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초기 충격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한국)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국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초기(2020년)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고용패널 또는 노동력조사 데이터가 확보 가능하고, 직업별 세분화된 정보와 비경제활동 여부(결근 포함)를 식별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정책 대응의 다양성과 제도적 배경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 고용구조, 보건 대응방식 등이 상이한 국가를 포함시켜 분석의 일반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의 경험을 국제적으로 비교·맥락화하기 위해, OECD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경제구조 및 고용 패턴이 유사하거나 대조적인 사례를 포함하였다.[11)] 우선, 주요 노동시장 결과 변수에 대한 정의 및 구성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여러 국가의 직업 분류 체계를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각 직업이 원격근무 또는 대면 상호작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지수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국가별 데이터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 데이터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함께, 8개국 모두에 대해 현재 취업자의 직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10)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1-10-08/583984-recipients-socr-hf.htm, 검색일자: 2025. 4. 4.

11) 호주, 한국, 미국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은 같은 기간의 분기별 유로스탯(Eurostat)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람에 대해서도, 최대 1년 전까지의 최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일부 확보할 수 있다.[12] 이와 유사한 정보는 한국과 호주에서도 수집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친 영향을 인구집단별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주목한다. 이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결혼 여부, 가구 내 자녀 유무이며, 분석 대상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였다.

1. 노동시장 결과 변수

본 연구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19)의 기준에 따라 고용상태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는 ① 현재 일하고 있는 취업자, ② 취업 상태이지만 일시휴직 중인 자, ③ 최근 실업자(6개월 이내 실직),[13] ④ 장기 실업자(6개월 이상 실직), ⑤ 노동력 이탈자로 구성된다. 이 구조는 모든 국가에서 고용 변수를 정의할 때의 기본 틀로 활용되며, 고용 상태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그림 1 고용 상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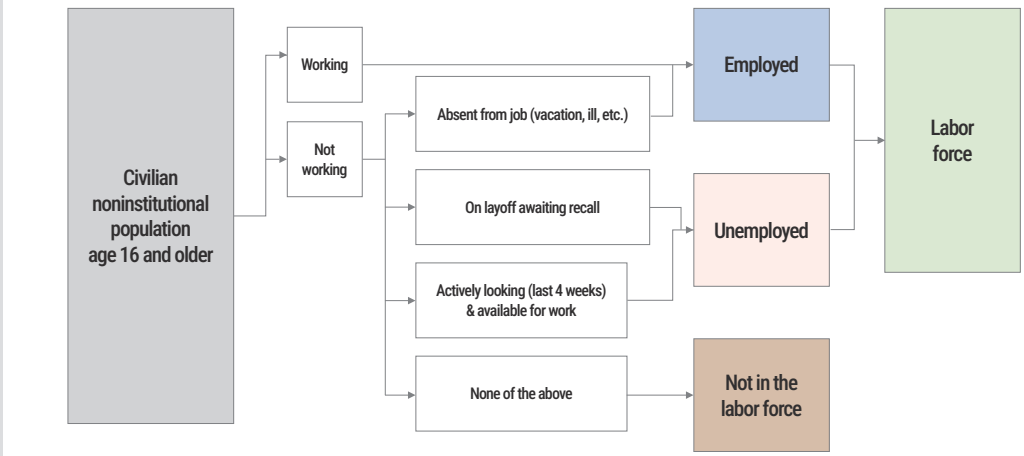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cps/definitions.htm, 검색일자: 2025. 4. 4.

12) 이러한 데이터는 분석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한국과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3)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0)에 따라 장기 실업자란 현재 실업자이며 실직이 27주 이상 지속된 사람을 나타낸다. 실업급여(또는 보험)는 미국의 경우 26주, 한국의 경우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 중 '일시휴직자'는 급여 유무와 관계없이 질병, 휴가, 교육, 직업훈련, 노동쟁의, 개인 사정 등으로 정규 근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Statistics Korea, 2021).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범주는 특히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국가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제 해고 없이 근로자를 휴직 상태로 유지하였다(Bogage, 2020; Borden et al., 2020). 둘째, 일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건강 보호나 가족 돌봄을 위해 직장을 떠났을 수 있다.[14] 셋째, 초기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조사원이 일시휴직 상태로 코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상태이지만 일하지 않는'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해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근로자가 데이터에 고용되어 있지만 부재 중인 것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15]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즉 결근한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분석의 핵심 변수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노동연령인구(18~65세) 대비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으로, 이는 일시휴직자, 실업자, 노동력 이탈자를 포함한다. 둘째, 취업자 중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 즉 현재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 상태를 나누는 지표다.[16]

코로나19 관련 해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근로자가 데이터에 고용되어 있지만 부재 중인 것으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

기존의 실업률 대신 전체 고용 상태를 총 노동연령인구 기준으로 비율화하여 측정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력 규모 자체가 급격히 변동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력 규모가 줄어들면 실업률은 인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정하기 위해 총인구 기준의 비율 지표를 사용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고용 상태별 비중을 2019년 같은 월 또는 분기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계절성 효과를 제거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 비록 장기 실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장기 실업자와 최근 실업자의 비중 변화는 노동시장 이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이 노동시장에 미친 단기 충격의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14) 예를 들어, 학교 휴교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Heggeness, 2020).

15) 미국 노동통계국은 조사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최근 해고 또는 실업자로 코드화하도록 지시했지만, 조사원들은 이들 중 적어도 일부를 고용되었지만 결근한 것으로 코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Montenovo et al., 2022).

16) 각국의 정의를 미국의 정의에 맞추려고 했지만, 국가마다 불가피한 차이가 있다. 〈부 표 1〉에 각 국가별 변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대면 상호작용 지수는 고객, 동료, 상사 등과의 직접 접촉 빈도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원격근무 지수는 해당 직무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수행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직업별 지표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직종별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Montenovo et al.(2022)이 개발한 두 가지 지표-① 대면 상호작용 의존도(Face-to-Face, F2F), ② 원격근무 가능성(Remote Work, RW)-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직업정보 네트워크(O*Net) 데이터에서 구축되었다.[17] 이 데이터는 근로자들에게 특정 업무 수행의 빈도나 중요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직무 특성을 정량화한 자료이다.[18] 대면 상호작용 지수는 고객, 동료, 상사 등과의 직접 접촉 빈도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원격근무 지수는 해당 직무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수행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직업은 복수의 표준직업분류(SOC)에 매칭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평균 지수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2]는 하위 인구집단별 대면 및 원격근무 지수의 평균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이전 직종별 근로자의 분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19] 이 수치는 모든 국가의 평균과 국가별 평균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두 가지 직업적 특성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대해 국가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실제로 2019년(또는 유럽 국가의 경우 해당 분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대면 접촉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원격근무 적응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24세 청년층이 대면 의존도가 높은 직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고, 원격근무 가능성은 가장 낮았다. 고령 근로자일수록 대면 업무 비중이 낮은 직무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면 지수는 중간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고, 가장 낮거나 높은 교육수준에서는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원격근무 가능성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기혼 남성은 미혼 남성에 비해 대면 접촉이 적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무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17) 2019 O*NET 업무 상황 모듈은 968개(2010 SOC 기준) 직종에서 사용되는 업무의 요약 측정을 보고한다(O*NET, 2020).

18) 예를 들어, 한국 데이터에는 252개의 산업 코드와 153개의 직업 코드가 있다. 한국 데이터의 하나의 직업 코드를 최대 3개의 미국 SOC 코드와 매칭하였다. 그런 다음 일치하는 SOC 코드에서 직업 지수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19) 미국과 한국의 경우 4월 데이터를, 호주의 경우 5월 데이터를, 유럽 국가의 경우 2019년 2분기를 사용한다.

그림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면 상호작용 지표 및 원격근무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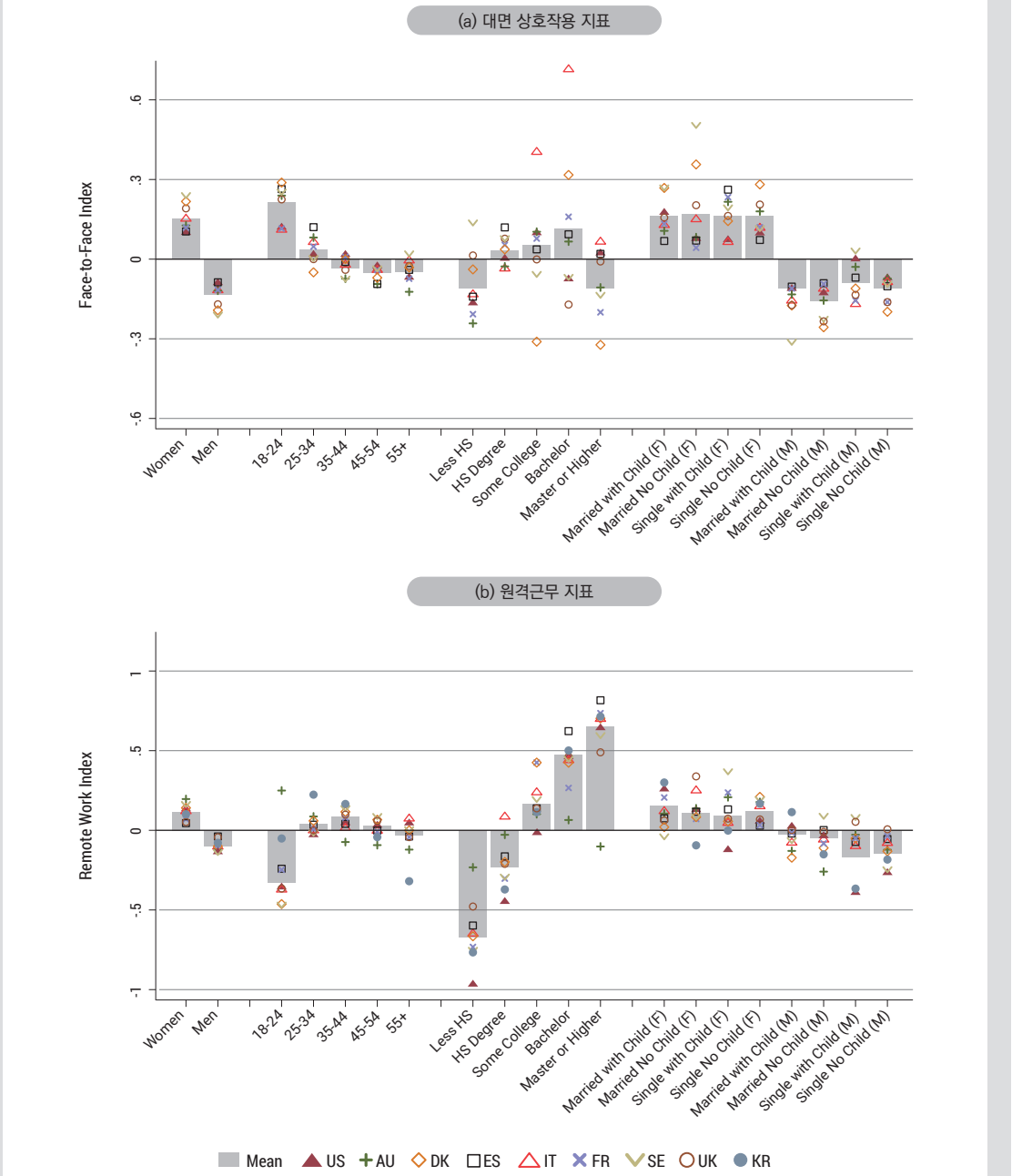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인구통계학적 그룹별 대면 및 원격근무 지수를 보여준다. 막대는 8개 국가에 걸친 지수의 평균을, 마커는 각 국가별 수치를 나타낸다. 표본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직장인 응답자로 구성되었다. 두 지수는 각 국가에서 평균 0, 표준편차 1을 갖도록 표준화되었다. 이 수치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기간은 미국과 한국의 경우 4월, 호주의 경우 5월, 유럽의 경우 2019년 2분기이다. 가구 특성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였으며, 미혼/기혼과 자녀 유무를 결합하여 총 4개의 그룹을 만들었다.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일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집단별 직무 특성의 차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난 고용률, 실직률, 노동시장 이탈 등 주요 고용 지표의 격차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특히 직종별 대면성 및 원격근무 가능성 지표는 단순한 산업 또는 직업 분류보다 코로나19 특유의 고용 충격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측정 도구로 기능하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직업군, 성별, 가족구성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의 차이 분석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Ⅳ 코로나19 충격과 비근로 상태 근로자의 확산

코로나19의 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각국의 노동시장 내 비경제활동인구-즉, 일시휴직자, 최근 실업자, 장기 실업자, 노동력 이탈자-의 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의 변화를 분석한다.

1. 노동시장 결과의 총 변화

본 절에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노동시장 전체와 고용 상태에 미친 총체적인 영향을 시기, 규모, 성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림 3]은 각 국가의 전체 및 고용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먼저 노동시장의 변화를 시기에 따라서 살펴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시점은 2020년 4월 또는 2분기였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3월부터 일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조기 확산국들과 유사한 흐름으로, 방역 초기에 고용 충격이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20)]

20) 미국의 경우 3월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 CPS 조사의 기준 주가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첫 주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 비근로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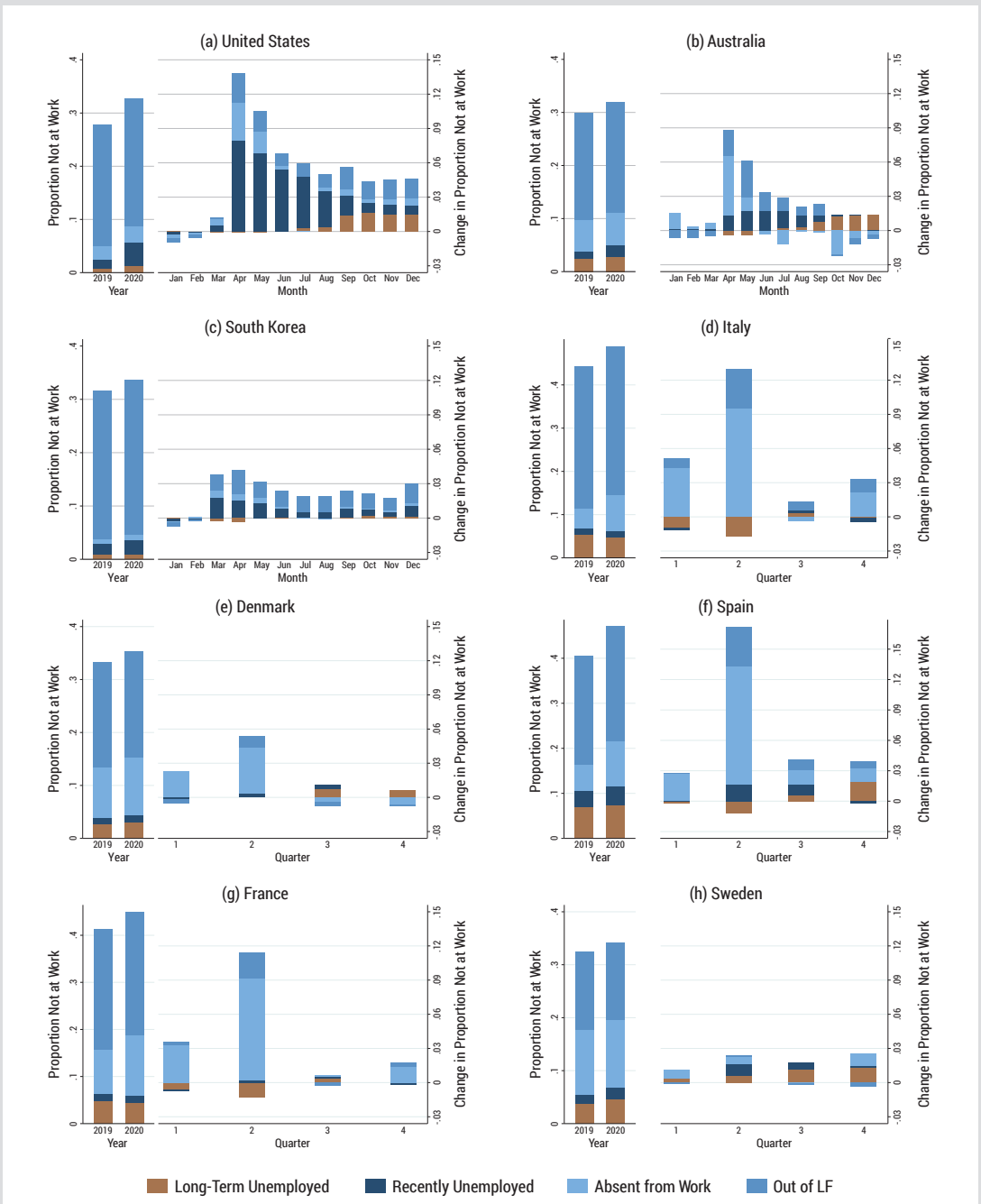

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① 장기 실업자(Long-Term Unemployed), ② 최근 실업자(Recently Unemployed), ③ 결근자(Absent from Work), ④ 노동력 이탈자(Out of LF). 일반적인 실업은 장기 실업과 최근 실업으로 구성된다. 각 그림의 왼쪽 패널은 2019년과 2020년에 일하지 않은 18~65세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각 그림의 오른쪽 패널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각 노동력 상태별 인구 비중의 변화를 월별(미국, 호주, 한국의 경우) 또는 분기별(유럽 국가의 경우)로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반응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이탈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증가폭은 작지만 구성은 특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스웨덴과 한국은 약 3%포인트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은 10% 이상 급등하였고, 스페인은 2분기에만 15%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있었으나 전면 봉쇄 없이 방역을 수행하면서도 휴직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는 한국 특유의 방역전략과 기업 고용유지 행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용 감소의 성격은 국가마다 달랐다. [그림 3]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변화를 장기 실업자, 최근 실업자, 휴직자, 노동력 이탈자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미국의 경우 실업과 휴직이 동시에 급증하였고, 유럽과 호주는 휴직자 중심의 고용 감소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휴직자 비중은 거의 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최근 실업자와 노동력 이탈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일자리 상실이 휴직이 아닌 실업과 노동시장 이탈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전면적 봉쇄 없이도 방역 효과를 얻은 대신,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유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비교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휴직보다 계약 종료나 실업의 형태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호주의 'JobKeeper'와 같은 고용유지 보조금 정책이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따른 통계상의 분류 방식(labeling), 특히 유럽과 호주의 고용유지 및 단기 근로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호주는 JobKeeper 프로그램을 통해, 일은 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근로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고용 중인 사업체에는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 인원이 많아졌고, 그 결과 '취업자' 범주 내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기 고용제도(short-time work schemes)를 운영하였다. 이처럼 고용을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취업'으로 간주한 방식은,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 '결근자' 또는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을 설명해주는 요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반응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이탈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증가폭은 작지만 구성은 특이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초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노동력 이탈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에 따라 달랐다. 특히 한국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노동력 이탈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율은 한국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는 3%포인트 내외로 하락하였으며, 미국은 2020년 내내 회복되지 않은 반면, 다른 국가는 빠르게 반등하였다.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는 긴축 조치와 더불어 소득보전, 고용유지 제도, 유연근무 제도 등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2. 정책적 대응

각 국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각기 다른 정책적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들은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기업 및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각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했는지 정량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옥스포드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 추적기(OxCGRT)의 엄격성 지수를 사용했다.[21)]

[그림 4]는 2020년 2분기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증가와 지수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22)] 본 연구의 표본 국가들은 정부 정책의 엄격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개국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표본과 유로스탯(Eurostat) 데이터셋에서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하는 더 큰 표본 모두 코로나19 초기 단계 동안 긴축 지수와 비실업률 증가 사이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공중보건 조치가 필요했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는 긴축 조치와 더불어 소득보전, 고용유지 제도, 유연근무 제도 등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21) OxCGRT 엄격성 지수(https://github.com/OxCGRT/covid-policy-tracker, 검색일자: 2025. 4. 23.)는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공행사 취소, 공공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자택 대피 명령, 공공 정보 캠페인, 내부 이동 제한, 국제 여행 통제 등 9가지 대응 지표를 종합한 지수이다.

22) 엄격성 지수와 경제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측정되었으며, 본 분석은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이행 및 적용에 있어 국가 내에서 상당한 차이는 포착되지 않았다.

그림 4 국가별 정책적 대응 정도와 노동시장에서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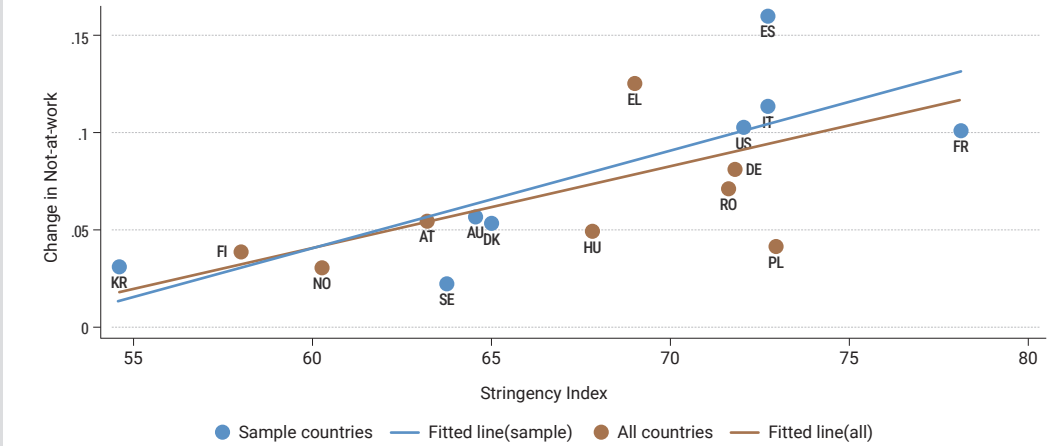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2019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대비 휴직자 증가율과 거리두기 정책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x축은 2020년 2분기 정부 정책의 OxCGRT 엄격성 지수를 나타내며, y축은 2019년 대비 2020년 2분기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다. 검은색 점(및 검정 선)은 표본에 포함된 8개국을 나타낸다. 회색 점(및 회색 선)은 Eurostat 데이터셋 내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다.

각국은 코로나19로부터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 제도(JR: Job Retention)와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을 혼합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별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었다. 고용유지 제도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반면 실업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즉, 보장 범위(coverage)와 대체 수준(replacement rate)-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고용을 조정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고용유지 정책이 관대한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경우, 즉 일시휴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실업보험이 보다 관대한 국가에서는 실직자 비중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관대함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첫째, 보장률(coverage rate)은 노동연령 인구 중 해당 혜택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둘째, 대체율(replacement rate)은 평균 임금 대비 지급받는 혜택의 비율이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와 실업보험 각각에 대해 총 네 가지 지표-JR 보장률,

JR 대체율, UI 보장률, UI 대체율-를 산출하였다.[23)]

보장률은 높지만 대체율이 낮은 호주의 실업보험처럼 범위는 넓지만 지급 수준이 낮은 사례가 있는 반면, 보장률은 낮지만 대체율이 높은 스웨덴의 고용유지 제도처럼 대상은 좁아도 지급이 후한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단일 지표로는 정책의 실질적 관대함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보장률은 높지만 대체율이 낮은 호주의 실업보험처럼 범위는 넓지만 지급 수준이 낮은 사례가 있는 반면, 보장률은 낮지만 대체율이 높은 스웨덴의 고용유지 제도처럼 대상은 좁아도 지급이 후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보장률과 대체율의 곱으로 정의한 복합 지수를 활용하여 정책의 실질적 관대함을 측정하였다.

[그림 5]는 고용유지(JR)와 실업수당(UI) 정책의 상대적 관대함과 2020년 2분기 취업했지만 결근한 사람의 증가 대비 최근 실업률 증가 비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x축은 고용유지(JR) 종합 지수와 실업수당(UI) 종합 지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y축은 취업했지만 결근한 사람의 수 대비 실업률 변화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업수당(UI)보다 고용유지(JR) 정책이 더 관대한 국가에서는 취업했지만 결근한 사람의 증가 대비 실업률 증가가 더 작다는 명확한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미국과 한국은 고용유지(JR) 프로그램보다 실업수당(UI)이 더 관대했으며, 취업했지만 결근한 사람보다 실업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 반면,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적합된 하향 기울기선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전반적으로, [그림 5]는 사회 안전망 정책의 설계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별 비실업 인구 구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23) 보장률은 사회급여 수급자 – 고빈도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별 급여 수급자 수에 대한 데이터와 OECD 데이터 탐색기의 노동 연령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의 대체율은 OECD(2020)에서 가져왔다. 미국 실업보험 대체율은 미국 노동부에서, JR 대체율은 Autor et al.(2022)에서 계산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용유지율 통계는 고용노동부, 실업보험 통계는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20030020에서 가져왔다. 호주의 대체율은 https://theconversation.com/how-can-more-people-be-on-unemployment-benefits-than-before-covid-with-fewer-unemployed-australians-heres-how-181733에서 계산했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보험 대체율은 Adermon et al.(2024), 고용유지 대체율은 Fritzell et al.(2021)에서 가져왔다.

그림 5 고용유지제도와 실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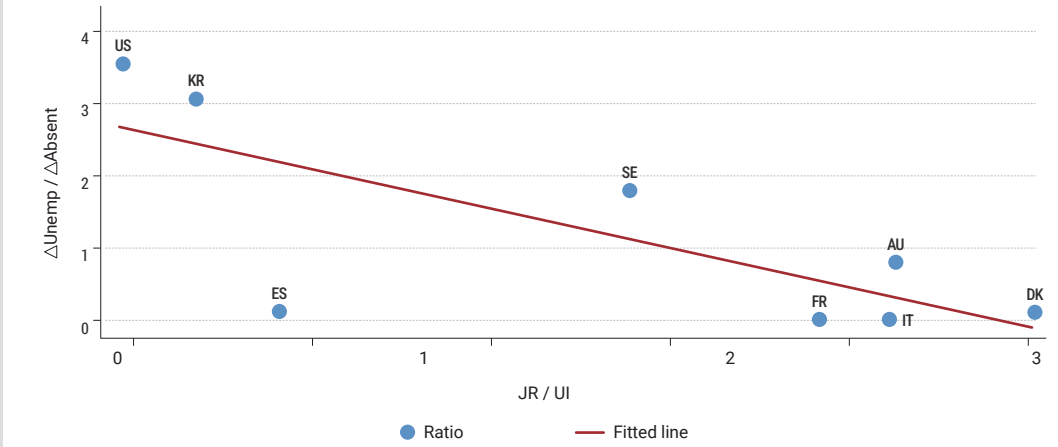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2019년과 2020년 2분기에 취업했지만 결근한 사람의 증가율 대비 최근 실업률 증가율의 비율과 실업수당에 대한 고용유지 정책의 상대적 관대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각 정책의 관대함은 보장률과 대체율을 곱하여 측정한다. 보장률은 취업연령 인구 중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고, 대체율은 평균 임금 대비 급여 규모이다. 빨간색 선은 표본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적합 OLS 선이다.

물론 분석에 포함된 국가 수가 적기 때문에 지나친 일반화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관대한 고용유지 정책은 실업률이나 결근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업보험의 관대함은 반드시 실업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

이전의 증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 격차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공급 변화의 정도를 밝힐 수 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성별, 자녀 유무와 상호작용하는 결혼 상태의 네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변수를 조사하는 다변량 회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i,t} = \alpha_0 + \alpha_1 Age_{i,t} + \alpha_2 Edu_{i,t} + \alpha_3 Female_i + \alpha_4 FamilyComp_{i,t} + \beta_1 Year_t \times Age_{i,t} + \beta_2 Year_t \times Edu_{i,t} + \beta_3 Year_t \times Female_{i,t} + \beta_4 Year_t \times \mathrm{Family}_{i,t} + \rho_t + u_{i,t} \quad (1)$$

여기서 i는 개인을 나타내고 t는 2019년 또는 2020년을 나타낸다. $y_{i,t}$는 개인 i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과 같은 이진 지표이다. 연도가 2020년인 경우(즉, 2019년 대비) $Year_t$는 1이 된다. 이 회귀는 4개 분기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행한다. 따라서 β 추정치는 특정 분기에서 2019년과 2020년의 비근무자 점유율 변화를 다양한 인구 통계 그룹에 대해 포착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국가의 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젊은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가. 연령별

[그림 6]은 식 (1)을 바탕으로 다른 변수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연령별 비근로자 비율의 예측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각 도표에는 점선을 기준으로 4개 분기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그림은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첫째, 연령은 근로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여러 국가의 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젊은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국가별로 노동시장 구조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임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이중 노동시장의 특징이 있다(Lehner et al., 2024; European Commission, 2010; Bentolila et al., 2019). 셋째,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대응은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노동공급을 어떻게 줄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령 근로자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 수도 있다.).[24)]

24)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임시직 또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젊은 근로자의 비중이 특히 높다. 18~24세 연령대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56.49%, 71.81%, 62.80%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30.18%, 50.16%이다. 25~34세 연령대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19.84%, 41.06%, 30.24%, 덴마크는 14.66%, 스웨덴은 18.74%이다.

그림 6 연령별 비근로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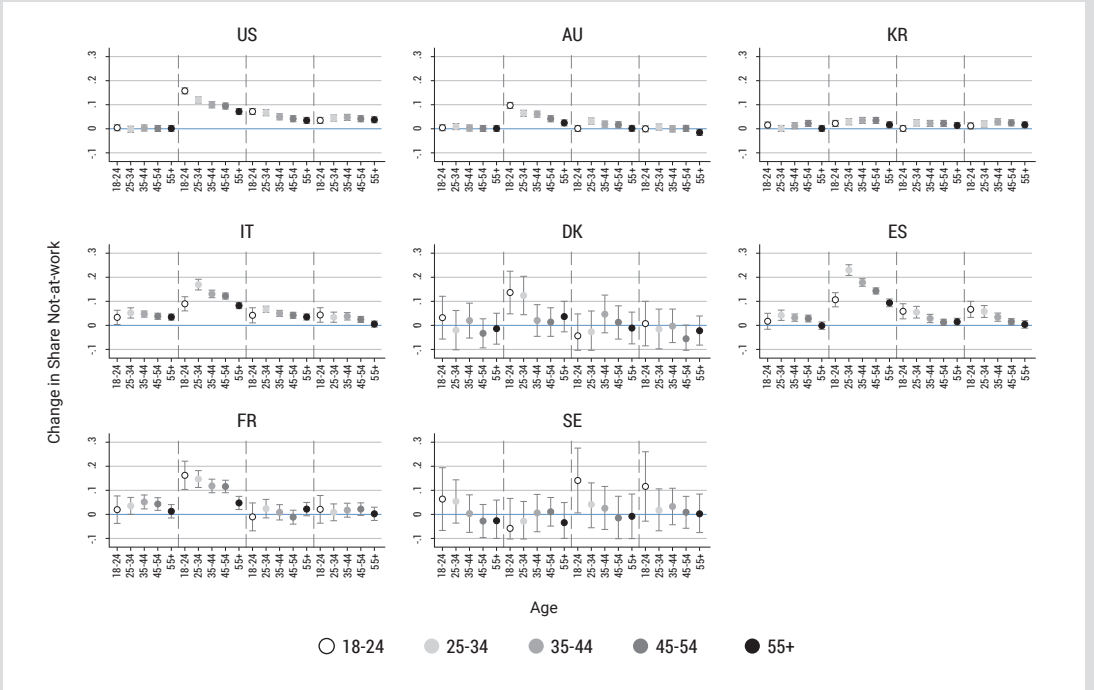

주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5세의 다섯 가지 연령대에 대해 다른 변수(교육,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를 평균으로 유지하면서, 식 (1)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각 분기별로 비근로자 인구의 예상 증가율을 그래프로 표시한다. 그림은 각 국가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각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타내는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충격을 집중시켰으며,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이 불안정하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취약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충격에 취약한 집단으로 분석된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은 고용주와의 유대가 강하고 해고 비용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이 더 안정적인 편이다.

한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연령별 노동시장 반응이 다소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먼저, 한국은 유럽과 달리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대신 진단검사 및 방역 시스템에 집중하였다. 또한 관광업 비중이 낮고, 배달·비대면 소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활동은 일부 부문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층 상당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학교 재학률이 높아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았고,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취약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컸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초기에는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두 번째로 젊은 그룹(25~34세)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세대이며, 69% 이상이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비교적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완만하였다.

고령 근로자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단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 및 은퇴 직전 고용유지 동기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남아있었음을 시사한다.[25)]

고령층이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 및 은퇴 직전 고용유지 동기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남아있었음을 시사한다.

나. 교육수준별

[그림 7]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예측 변화를 제시한다. 코로나19 초기, 특히 2020년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수준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계속 일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기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크다는 기존의 통찰과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패턴과 다른 결과도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호주에서는 중간 교육수준(예: 고등학교 졸업자) 근로자의 비경제활동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고등학교 중퇴자보다도 더 취약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교육수준 자체보다는 직업의 성격과 분포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간수준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은 고객 응대나 현장 근무 등 대면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직종에 더 자주 종사한다. 이와 달리, 고등학교 중퇴자들은 상대적으로 배달 서비스, 물류 등 비대면 중심이면서도 코로나19 중 수요가 증가한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직종 분포의 차이가 교육수준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 모든 국가에서 고령층의 노동력 참여율 감소폭이 청년층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청년층에 집중된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림 7 교육수준별 비근로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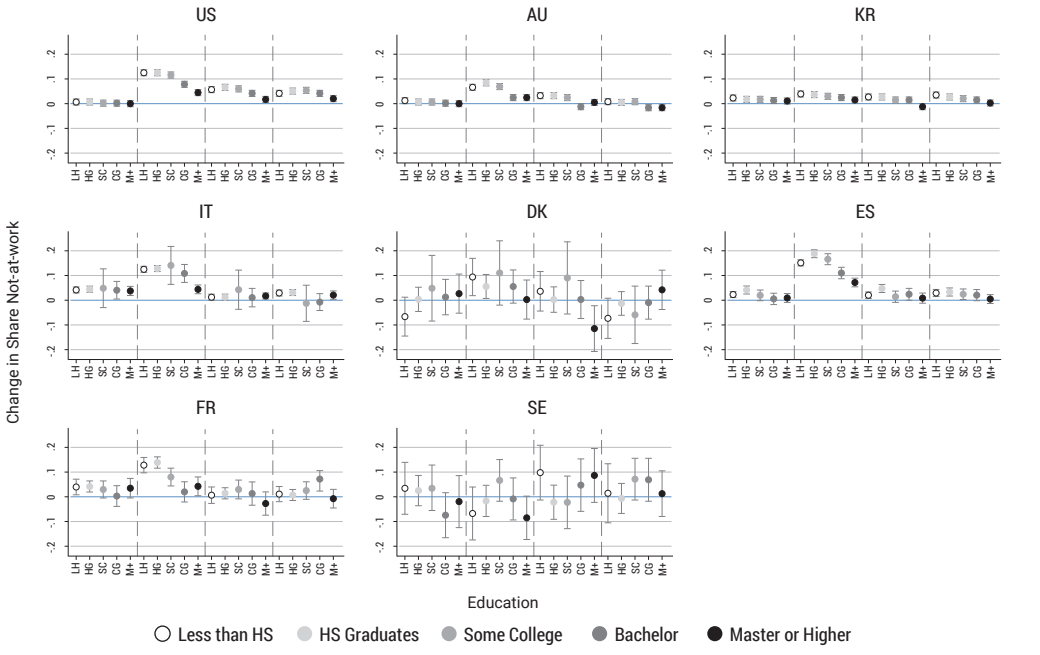

주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일부 대학, 학사, 석사 이상의 네 가지 학력 그룹에 대해 다른 변수(연령,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를 평균으로 유지하면서 식 (1)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각 분기별로 비근로자 인구의 예상 증가율을 그래프로 표시한다. 그림은 각 국가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각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타내는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저교육층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중간 교육수준 근로자의 비경제활동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숙련 근로자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유지율이 높았다. 이는 정보통신업, 전문직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원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와 일치한다.

또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충격의 양상은 코로나19의 충격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충격이 큰 국가일수록 그 격차도 더 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졸 이상 근로자의 고용 감소는 거의 없었던 반면, 대부분의 고용 감소는 고졸 이하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스페인에 비해 코로나19 충격 자체는 작았지만, 직업군별 고용안정성의 차이가 교육수준에 따라 구조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유사한 교육 격차가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성별

[그림 8]은 식 (1)을 이용해 다른 변수들을 평균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예측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체계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실직 증가폭이 더 컸으며, 노동력 이탈 측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더 불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에서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을 이탈했으나, 그 차이는 이후 빠르게 해소되었고 일시적 경향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Bluedorn et al.(2021)이 38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와도 일치하며, 해당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초기 여성 고용에 미친 부정적 충격은 대체로 단기적이고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8 **성별 비근로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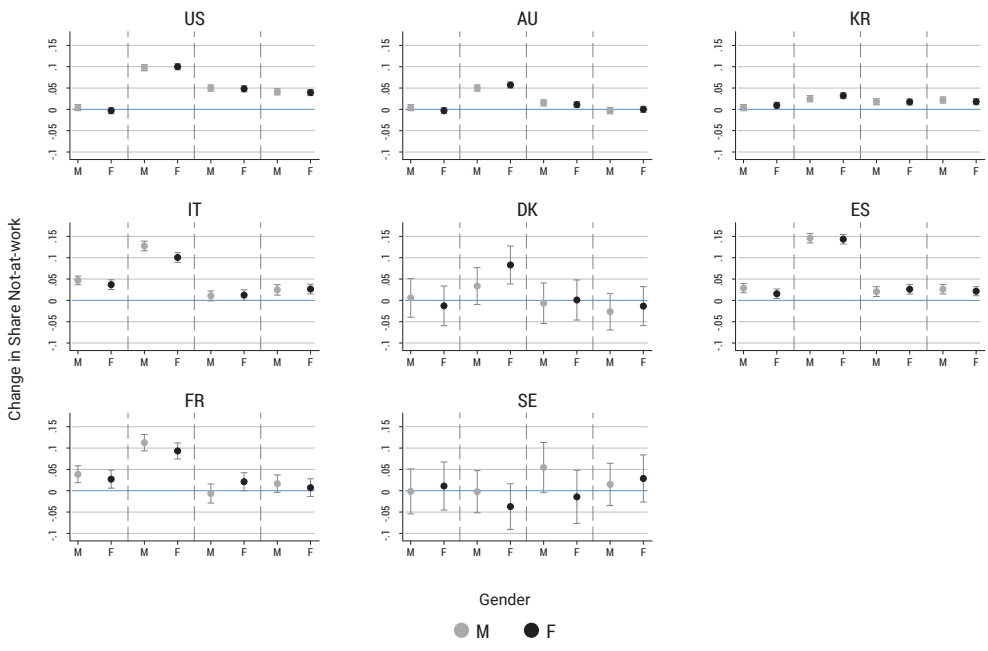

주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일부 대학, 학사, 석사 이상의 네 가지 학력 그룹에 대해 다른 변수(연령,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를 평균으로 유지하면서 식 (1)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각 분기별로 비근로자 인구의 예상 증가율을 그래프로 표시한다. 그림은 각 국가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각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타내는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노동시장 결과의 변화가 단순히 노동수요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근로 의지 변화, 혹은 육아·돌봄 등의 요인으로 인한 근로 가능성 변화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구조적 격차보다는 국가별 직업 구조, 정책 반응, 가족·돌봄 환경 등 맥락적 요인이 성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노동시장 결과의 변화가 단순히 노동수요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근로 의지 변화, 혹은 육아·돌봄 등의 요인으로 인한 근로 가능성 변화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에 따르면, 여성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지만, 동시에 대면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사처럼 원래는 대면 업무가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 업무로 빠르게 전환된 직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중적 분포 구조는, 여성 고용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상반된 방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원격근무 전환이 가능한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었던 점은 노동수요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었으며, 반면 대면 업무 중심 직종에의 종사 비율은 감염 위험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다. 이 두 효과가 상쇄되면서 성별 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뚜렷한 격차 없이 균형을 이룬 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에 여성 고용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원격근무 전환이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 정부의 어린이집·학교 휴교 완화 정책, 비대면 서비스업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 원격근무로 전환 가능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용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여성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반면, 서비스업 및 소매업 등 대면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단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세부 산업별 분석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라. 자녀 및 결혼 여부

자녀를 둔 부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 및 보육시설의 휴교로 인해 돌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Heggeness, 2020). 기존의 전통적 가정 내 역할 분담 관점에서 보면, 이 부담은 주로 자녀가 있는 여성, 특히 한부모 여성에게 집중되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성이 가계의 주 소득자이자 안정적인 경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 여부에 따라 개인을 '기혼'(법적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과 '미혼'(그 외)으로 분류한다.[26] 이는 일부 국가(예: 유럽권)에서는 법적 혼인 정보가 아닌 '동거 여부'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통계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자녀 유무를 교차하여 노동시장 결과를 분석한다.[27]

그림 9 **자녀 및 결혼여부별 비근로자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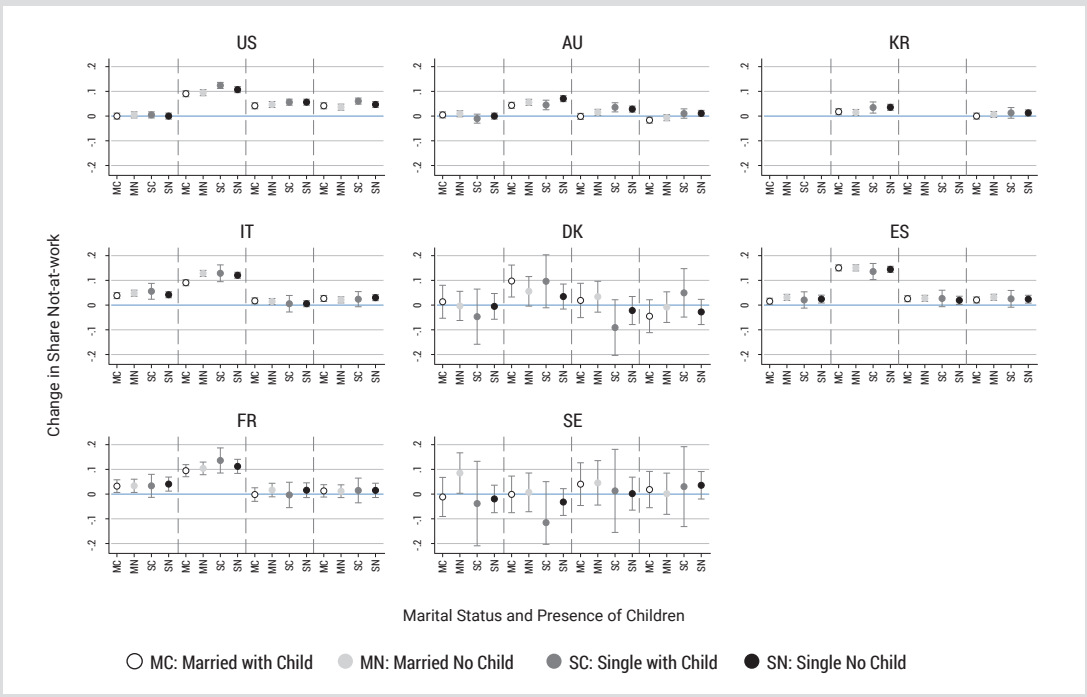

주 자녀가 있는 기혼(MC), 자녀가 없는 기혼(MN), 자녀가 있는 미혼(SC), 자녀가 없는 미혼(SN)의 네 그룹에 대해 다른 변수(연령, 교육, 성별)를 평균으로 유지하면서 식 (1)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각 분기별로 비근로자 인구의 예상 증가율을 그래프로 표시한다. 그림은 각 국가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각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타내는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그림 9]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녀 유무 및 결혼 상태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예측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26) 본 연구에서 이혼했거나 결혼했지만 별거 중인 개인을 독신으로 분류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주로 결혼 여부보다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7) 연구에 사용된 모든 국가의 자녀 기준 연령은 15세 미만인 호주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이다.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직업 특성과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에서는 특히 자녀가 있는 미혼자의 고용 감소폭이 자녀가 있는 기혼자보다 약간 더 컸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2분기, 코로나19의 정점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변화가 작고 명확한 패턴이 없었다.[28] 한편, 자녀가 있는 미혼자의 경우에는 돌봄 책임을 나눌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어, 노동공급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중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학교의 휴원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여성 고용의 급격한 하락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일부 직종(예: 교육, 공공행정 등)에서 원격근무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가족 내 조부모 등 비공식 돌봄 자원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유지되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직업 지표 및 노동시장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시장 성과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절에서는 회귀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직업 특성과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각 국가의 초기 코로나19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2020년 2분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직업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에 개인이 종사했던 직업 정보와 노동시장 상태를 연결하였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실직자의 직업 정보가 부족하여 결과 변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Eurostat에서는 실업자의 직전 직업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호주 또한 많은 실직자에 대해 직업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 변수는 현재 또는 직전 직업 정보가 존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용 중이며 실제 근무 중(employed and at work)" 여부에 대한 이진 지표이다. 실업자 정보를 온전히 포함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나, 코로나19 초기 '일하지 않는'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은 고용된 상태에서 결근한 사람(employed-but-absent)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직업 정보는 확보되어 있다.

28)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와 체계적인 성별 차이가 없다는 이전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여기서는 성별에 따른 추가 수치는 생략했다.

본 연구는 직업 특성과 노동시장 결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직업 특성을 독립 변수로 개인 단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교육,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은 개인 특성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직업 특성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통해 국가별로 2020년 2분기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되었다:

$$y_{ij} = \alpha + \beta Occ_j + \theta X_i + \epsilon_{ij} \quad (2)$$

여기서 y_{ij}는 개인 i가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종사한 직업 j에 따라 근로 중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 변수이며, Occ_j는 직업 지수(face-to-face 지수 또는 remote work 지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β는 코로나19 초기 기간 동안 개인이 계속해서 일할 확률과 직업 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 X_i는 연령 제곱항, 성별, 교육수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등의 인구통계학적 통제 변수 벡터이다.[29]

[그림 10]은 각 국가별로 직업 지수가 개인의 고용 및 근로 상태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주며, 통제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추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면 상호작용 지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 중이며 실제로 일하고 있을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재택근무 지수는 해당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두 직업 지수 모두 노동시장 성과와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를 보이지 않아 예외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미국,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는 통제 변수(연령, 성별, 교육,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를 포함하더라도 추정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직업 특성이 인구학적 배경과 무관하게 노동시장 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통제 변수를 포함하자 직업 지수의 효과가 사라졌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특정 인구집단이 이미 특정 직업에 사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선별적 배치가 직업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대면 상호작용 지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 중이며 실제로 일하고 있을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재택근무 지수는 해당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29) 본 회귀분석은 국가별 이질적 기울기를 허용하는 고정효과 회귀와 유사하다. 단, 이동제한 및 재정지원 정책은 국가 내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 결과는 제도적 요인이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기타 국가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0 직업 특성과 고용 상태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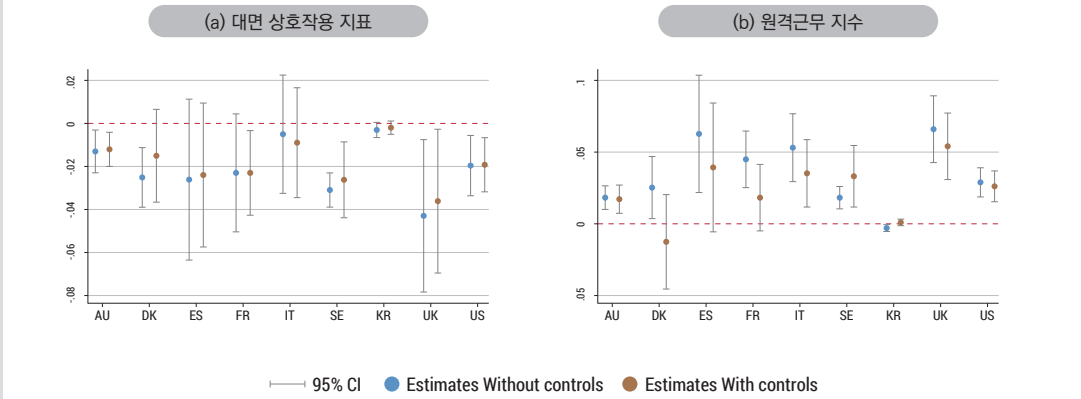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방정식 (2)의 회귀 추정값을 나타내며, 고용과 대면 상호작용의 중요성(왼쪽 패널) 및 고용과 원격근무 가능 여부(오른쪽 패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회귀식에서 통제 변수를 포함했을 때는 빨간색,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타냈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재직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지표 변수이다. 회귀분석은 2020년 2분기(미국과 한국은 4월, 호주는 5월, 유럽은 2분기)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고용자에게 적합한 직업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표본은 고용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V 결론

코로나19는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각국의 제도와 정책 선택에 따라 고용 조정의 모습은 뚜렷이 달랐다.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틀로 8개국의 노동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비교하여, 인구집단별(연령·교육·성별·가족구성) 고용변화가 직무 특성(대면의존도, 재택가능성)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면 봉쇄 없이도 초기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했으나, 고용유지 중심의 유럽과 달리 실업·노동력 이탈의 형태로 조정이 나타난 점은 사회안전망 설계의 차이가 노동시장 구성요소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연령별 차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근로자가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취약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특이하게도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년층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수가 적은 구조적 특성이 영향을 주었다. 반면, 25~34세 중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그룹은 고용 충격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교육수준에 따른 고용 격차는 코로나19 초기 특히 두드러졌다.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대졸 이상 고학력 근로자는 대면 접촉이 적은 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셋째, 성별 및 가족구성의 차이는 국가 간, 집단 간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불리하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격차는 크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 감소폭이 적었던 것은 이들이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녀가 있는 미혼 남성은 대면 노동 비중이 높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 손실을 경험했다.

노동시장 충격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공급의 축소보다는 고용주의 고용유지 여부와 직업 구조의 특성이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변화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직업의 특성에 의해 매개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자의 기존 직종이 대면 접촉이 많은지, 또는 원격근무가 가능한지 여부가 고용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 근로자와 기혼 여성은 이러한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반대로, 서비스업·비정규직 등에 종사하던 청년층과 저학력층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충격에 더욱 취약했다. 또한, 필수산업에 종사하는 저학력 근로자는 원격근무가 어렵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배달, 물류,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고용 불안정성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인식과 달리, 이들이 일부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고용유지 프로그램과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가 국가별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특히 한국은 전면 봉쇄를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표적화된 검진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초기 고용 충격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한 2020년 하반기에는 노동력 이탈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고, 직종별 대응의 한계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이후 회복 국면에서도 국가별 경로는 갈라졌다. 특히 한국은 방역·완충정책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회복의 속도와 조합(고용유지 vs. 이동·전환 지원)이 달랐다. 치명률과 의료부담이 낮아진 2021~2022년에는 동일한 거리두기·지원정책이라도 한계효과가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의 '시간 가변성'을 별도로 식별하는 후속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충격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공급의 축소보다는 고용주의 고용유지 여부와 직업 구조의 특성이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 이는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고용 정책 설계에 있어 직종별 특성과

직종의 위험 노출도와 개인의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는 향후 노동시장 복원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면 접촉이 높은 직종(요양보호사, 유아보육교사 등)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이거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돌봄 부담과 감염 위험, 고용불안이라는 삼중의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업무 공백을 보완하는 단기 대체인력 지원,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재택 가능한 직무로의 직업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바우처 제공 등이 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직종의 위험 노출도와 개인의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는 향후 노동시장 복원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 저소득층, 1인가구, 싱글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교차적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KIPF

참고문헌

〈해외문헌〉

Adams-Prassl, Abi, Teodora Boneva, Marta Golin, and Christopher Rauh,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2020, 104245.

Adermon, A., L. Laun, P. Lind, M. Olsson, J. Sauermann, and A. Sjögren, "Earnings losses and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swede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70* no. 4, 2024, pp. 981~1010.

Alstadsæter, Annette, Bernt Bratsberg, Gaute Eielsen, Wojciech Kopczuk, Simen Markussen, Oddbjorn Raaum, and Knut Røed, "The first weeks of the coronavirus crisis: Who got hit, when and why? Evidence from Norway," No. w2713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Andersen, Asger Lau, Emil Toft Hansen, Niels Johannesen, and Adam Sheridan, "Pandemic, shutdown and consumer spending: Lessons from Scandinavian policy responses to COVID-19," arXiv preprint arXiv:2005.04630, 2020.

Aum, Sangmin, Sang Yoon Tim Lee, and Yongseok Shin, "COVID-19 doesn't need lockdowns to destroy jobs: The effect of local outbreaks in Korea," *Labour economics* 70, 2021,101993.

Aum, Sangmin, Sang Yoon Tim Lee, and Yongseok Shin, "Inequality of fear and self-quarantine: Is there a trade-off between GDP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4, 2021, 104354.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Microdata: Longitudinal Labour Force, Australia, December 2021," Catalogue number 6602.0. 2021.

Autor, D., D. Cho, L. D. Crane, M. Goldar, B. Lutz, J. Montes, W. B. Peterman, D. Ratner, D. Villar, and A. Yildirmaz, "The $800 billio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where did the money go and why did it go the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6, no. 2, 2022, pp. 55~80.

Avdiu, Besart, and Gaurav Nayyar, "When face-to-face interactions become an occupational hazard: Jobs in the time of COVID-19," *Economics Letters* 197, 2020, 109648.

Bartik, Alexander W., Marianne Bertrand, Zoë B. Cullen, Edward L. Glaeser, Michael Luca, and Christopher T. Stanton, "How are small businesses adjusting to COVID-19? Early evidence from a survey," No. w2698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Béland, Louis-Philippe, Abel Brodeur, and Taylor Wright, "The short-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Covid-19: exposure to disease, remote work and government response," *Plos one* 18, no. 3, 2023, e0270341.

참고문헌

Bentolila, Samuel, Juan J. Dolado, and Juan F. Jimeno, "Dual labor markets revisited,"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economics and finance, 2020.

Blau, Francine D., Josefine Koebe, and Pamela A. Meyerhofer, "Essential and frontline workers in the COVID-19 crisis," *Econofact* 6, 2020, 16.

Bluedorn, John, Francesca G. Caselli, Mr Niels-Jakob H. Hansen, Mr Ippei Shibata, and Ms Marina Mendes Tavares, "Gender and Employment in the COVID-19 Recession: Evidence on She-cession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Bogage, J., "Coronavirus unemployment guide: What to do if you get laid off or furloughed," *The Washington Post*, 2020.

Borden, Taylor, Allana Akhtar, J. Hadden, and D. Bose,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triggered unprecedented mass layoffs and furloughs," *Business Insider*, 2020.

Breunig, Robert, Wei Cheng, Laura Montenovo, Kyoung Hoon Lee, Bruce A. Weinberg, and Yinjunjie Zhang, "Cross-Country Analysis of Labor Marke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 w3302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4.

Brodeur, Abel, David Gray, Anik Islam, and Suraiya Bhuiyan, "A literature review of the economics of COVID-19,"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5, no. 4, 2021, pp. 1007~1044.

Brynjolfsson, Erik, John J. Horton, Adam Ozimek, Daniel Rock, Garima Sharma, and Hong-Yi TuYe, "COVID-19 and remote work: An early look at US data," No. w2734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Cheng, Siwei, Christopher R. Tamborini, ChangHwan Kim, and Arthur Sakamoto, "Educational variations in cohort trends in the black-white earnings gap among men: Evidence from administrative earnings data," *Demography* 56, no. 6, 2019, pp. 2253~2277.

Chetty, Raj, John N. Friedman, Nathaniel Hendren, Michael Stepner, and The Opportunity Insights Team, "How did COVID-19 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 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No w2743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Coibion, Olivier, Yuriy Gorodnichenko, and Michael Weber, "Labor markets during the COVID-19 crisis: A preliminary view," No. w270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Dingel, Jonathan I., and Brent Neiman,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2020, 104235.

참고문헌

Dudel, Christian, and Mikko Myrskylä, "Working life expectancy at age 50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act of the Great Recession," *Demography* 54, no. 6, 2017, pp. 2101~2123.

Elgin, Ceyhun, Colin Williams, and Gamze Öz Yalama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labor market interventions on reducing th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7, no. 1, 2023, pp. 352~374.

Elgin, Ceyhun, Colin Williams, and Gamze Öz Yalama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labor market interventions on reducing th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7, no. 1, 2023, pp. 352~374.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in Europe 2010," Number Chapter 3 in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2010.

Fajgelbaum, Pablo D., Amit Khandelwal, Wookun Kim, Cristiano Mantovani, and Edouard Schaal, "Optimal lockdown in a commuting network,"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3*, no. 4, 2021, pp. 503~522.

Farboodi, Maryam, Gregor Jarosch, and Robert Shimer, "Internal and external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in a pandemic,"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6, 2021, 105293.

Forsythe, Eliza, Lisa B. Kahn, Fabian Lange, and David Wiczer, "Labor demand in the time of COVID-19: Evidence from vacancy postings and UI clai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2020, 104238.

Fritzell, J., K. Nelson, J. Heap, and J. Palem,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Sweden,"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The matic Report, European Commision, 2021.

Galasso, Vincenzo, and Martial Foucault, "Working during COVID-19: Cross-country evidence from real-time survey dat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46, 2020, pp. 1~40.

Garcia, Kairon Shayne D., and Benjamin W. Cowan, "The impact of US school closures on labor market outc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 w2964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

Goolsbee, Austan, and Chad Syverson, "Fear, lockdown, and diversion: Comparing drivers of pandemic economic decline 2020,"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3, 2021, 104311.

Gupta, Sumedha, Laura Montenovo, Thuy Nguyen, Felipe Lozano-Rojas, Ian Schmutte, Kosali Simon, Bruce A. Weinberg, and Coady Wing,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policy on labor market outcome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41, no. 1, 2023, pp. 166~193.

참고문헌

Heggeness, Misty L., "Estimating the immediate impact of the COVID-19 shock on parental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and the double bind of mother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8, no. 4, 2020, pp. 1053~1078.

Khamis, Melanie, Daniel Prinz, David Newhouse, Amparo Palacios-Lopez, Utz Pape, and Michael Weber, "The early labor market impacts of COVID-19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510, 2021.

Killewald, Alexandra, and Xiaolin Zhuo, "US mothers' long-term employment patterns," *Demography* 56, 2019, pp. 285~320.

Koren, Miklós, and Rita Pető, "Business disruptions from social distancing," *Plos one* 15, no. 9, 2020, e0239113.

Kugler, Maurice, Mariana Viollaz, Daniel Duque, Isis Gaddis, David Newhouse, Amparo Palacios-Lopez, and Michael Weber, "How did the COVID-19 crisis affect different types of workers in the developing world?," *World Development* 170, 2023, 106331.

Lehner, Lukas, Paul Ramskogler, and Aleksandra Riedl, "Beggaring thy co-worker: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the wage growth slowdown in Europe," *ILO Review* 77, no. 5 2024, pp. 659~684

Montenovo, Laura, Xuan Jiang, Felipe Lozano-Rojas, Ian Schmutte, Kosali Simon, Bruce A. Weinberg, and Coady Wing, "Determinants of disparities in early COVID-19 job losses," *Demography* 59, no. 3 2022, pp. 827~855.

O*NET, O., National center for o* net development,"The O* NETR Content Model.," O*NET Resource Center, 2020.

OECD,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2020.

Shin, Jinwook, Seonghoon Kim, and Kanghyock Koh, "Economic impact of targeted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evidence from the large-scale clusters in Seou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92, 2021, pp. 199~221.

Soares, Sergei, and Janine Berg, "The labour market fallout of COVID-19: Who endures, who doesn't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inequality,"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61, no. 1, 2022, pp. 5~28.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021," 2021.

참고문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Employment Situation – December 2020," Technical report,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

U.S. Census Bureau, "Design and Methodology: Current Population Survey – America's Source for Labour Force Data," Technical Paper 77, Technical report, U.S. Census Bureau, 2019.

Verick, Sher, Dorothea Schmidt-klau, and Sangheon Lee, "Is this time really different? How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labour markets contrasts with tha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09,"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61, no. 1 , 2022, pp. 125~148.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Global Economic Impact & Trends 2019,"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9.

Yasenov, Vasil, "Who can work from home?," No. 13197, IZA Discussion Papers, 2020.

Zissimopoulos, Julie, and Lynn A. Karoly.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 the wake of Hurricane Katrina," *Demography* 47, 2010, pp. 345~367.

〈웹사이트〉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검색일자: 2025. 4. 4.

OECD,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1-10-08/583984-recipients-socr-hf.htm, 검색일자: 2025. 4. 23.

OxCGRT,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https://github.com/OxCGRT/covid-policy-tracker, 검색일자: 2025. 4. 23.

Whiteford, P. and B. Bradbury, "How can more people be on unemployment benefits than before COVID, with fewer unemployed Australians? Here's how", THE CONVERSATION (2022), https://theconversation.com/how-can-more-people-be-on-unemployment-benefits-than-before-covid-with-fewer-unemployed-australians-heres-how-181733, 검색일자: 2025. 4. 23.

고용행정통계(EIS), https://eis.work24.go.kr/eisps/rpt/reptDtl.do?menuId=020030020, 검색일자: 2025. 4. 23.

부록

부 표 1 **고용 상태: 국가별 분류 기준**

고용 상태	미국 (US)	호주 (Australia)	한국 (South Korea)	유로스탯 (EuroStat)
취업 및 근로 중	유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유급, 수익, 수수료 또는 현물 형태로 보상받는 근로를 최소 1시간 이상 수행한 자(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	유급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최소 18시간 이상 근무한 자	기준 주간에 최소 1시간 이상 유급 근로나 수익을 목적으로 근무한 자
취업 및 결근 중	일시적으로 휴가, 질병, 기상악화, 육아, 출산/육아휴직, 노사분쟁, 직무훈련, 기타 사유로 결근한 경우(유급 여부나 다른 일자리 탐색 여부는 불문)	기준 주간에 4주 미만 결근했거나 4주 이상 결근했지만 일부 기간 유급이었거나, 표준 교대제/근무시간 조정, 파업·직장폐쇄, 산재보상 수급 중 복귀 예정인 경우(자영업자 중 일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체 보유자는 포함)	일시적 질병, 사고, 휴가, 각종 휴가, 직업훈련, 육아, 노사분쟁, 기타 개인 또는 가족 사유로 일하지 않았으나 직장을 가진 사람	기준 주간에 일은 하지 않았으나 직업이나 사업체와의 연계가 유지된 사람으로, 휴가, 시간 조정, 병가, 출산휴가, 직업훈련, 유급 육아휴직, 계절근로자, 기타 사유로 3개월 이하 결근한 경우 포함
실업자	고용되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했거나, 일시 해고 상태에서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	기준 주간에 고용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기준 주간에 근로 가능 상태이거나, 4주 이내 새 일자리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사람	조사 주간 동안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근로가 가능한 사람	기준 주간에 일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거나,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시작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즉시 근로가 가능한 경우 포함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고용되지도, 실업 상태도 아닌 사람. 전업주부, 자녀 양육자, 은퇴자, 자발적 비경제활동자, 상시 불능자, 수용시설 거주자, 종교 공동체 구성원, 배심원 활동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포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 동안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전업주부 및 학생 포함	고용자 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출처 https://www.bls.gov/cps/definitions.htm for US,
https://www.abs.gov.au/statistics/standards/standards-labour-force-statistics/latest-release#labour-force-status for Australia,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odta?statsConfmNo=101004&kosisYn=Y for South Korea,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union-labour-force-survey for the Eurostat data

정책토론리포트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2025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4:00 ~ 17:3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4, 5
- **문　　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 재정패널팀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발표	토론
세션 I	사회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투자 성향 결정 요인 분석	최인수	조민영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연구	이경배	홍병진
	3	주택연금의 미시적 가입 의사결정의 분석	전병욱	김문정
세션 II	사회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부모의존 성인자녀 현상의 원인과 효과연구	오호영	강신혁
	2	소득 격차 인식과 정부 역할 기대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혜자·김혜진·백승주	최인희
	3	가계의 소득유형 및 소비유형별 교육비 영향 요인 분석	권초아	이경훈
세션 III	사회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분석 –재정패널자료 기반 로지스틱 회귀 및 DID 분석–	송채은·최민지	강지원
	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소득 계층별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나영	최정재
	3	주 52시간제 도입이 근로자 가구에 미친 영향 분석	이지은·송헌재	김보민
세션 IV	사회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1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홍우형	박정흠
	2	근로장려금 수급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신동협·송헌재	전병힐
	3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 공공재 기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연령 및 직업 이질성을 중심으로	강성훈	박벼리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사회	**권성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우수	일시적인 조세유인 확대와 기부행태	박동규	김정환
	장려	청년층의 위험자산 선호가 가계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	권혁준·이건희·허성혁	
	장려	문화 바우처의 문화비 지출 효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부터의 증거	이창수	
	장려	Weight of family: Labor supply responses to multigenerational co-residence	정재희·한희원	

세션 I

발표 1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투자 성향 결정 요인 분석

최인수 |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연구원

본 연구는 기계학습 기법과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활용하여 가계의 투자성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가구가 가상의 여유자금을 예금과 펀드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기반으로 투자성향을 분류하였다. 기계학습 모형에 해당하는 XGBoost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실제로 투자성향 예측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로 꼽히는 로이드 섀플리의 섀플리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기법의 평균 절대 SHAP값을 활용하여 예측 모형에 대한 변수별 기여도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행태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적용한 투자성향 분석의 가능성을 모색한 예비적 시도로, 향후 보다 다양한 변수와 분석 설계를 통해 관련 주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1

조민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XGBoost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계학습 기법과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가계의 투자 위험선호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의 고차원 자료 특성(high-dimensionality)을 반영하여, 가계의 어떤 특성이 투자 위험선호 예측에 유용한지를 분석하고,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법인 SHAP 분석을 통해 각 특성의 예측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XGBoost 기반 다중 클래스 분류 모형은 기존 로지스틱 회귀모형보다 예측 성능이 현저히 우수하였다. 둘째, 투자 위험선호 성향이 뚜렷한 가계일수록 XGBoost 알고리즘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SHAP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소득·자산 규모, 학력, 금융지식 등 선행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지적된 변수들이 한국 사례에서도 높은 예측 기여도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개인의 납세 행태나 사회적 책임의식 등 투자 행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은 특성들도 높은 예측 기여도를 보여,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재무적 의사결정과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한국 가계의 투자성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 가계의 위험선호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맥락에 맞춘 예측을 수행한 것은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기여다. 또한 고차원 자료 분석에 적합한 기계학습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 기여도도 가진다. 향후 데이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선형 방법론보다 비선형적 기계학습

기법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맺음말로, 연구의 기여와 시사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XGBoost 알고리즘이 연구 환경에서 적합한 이유를 언급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과의 비교를 수행했으나, 랜덤 포레스트나 LASSO 등 널리 사용되는 다른 기계학습 기법과의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학적 예측에서는 예측력뿐 아니라 방법론 활용의 용이성도 중요한 만큼, 다른 기계학습 기법들과의 직접 비교나 XGBoost를 선택한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둘째, 예측변수들의 SHAP 값이 상위 3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0.1 이하로 나타나, 낮은 SHAP 값을 가진 변수들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XGBoost와 SHAP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여도가 낮은 변수를 제외한 새로운 예측변수 집합으로 재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계 SHAP 값을 설정하여 변수를 선별하거나, LASSO 등 변수 선택 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예측변수 집합을 구성한 뒤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나 납세 의식처럼 투자 위험선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변수들이 한국에서는 왜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을 보강하면 연구의 함의가 더욱 커질 것이다. 기계학습 기법은 변수의 높은 설명력 자체는 제시하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자의 해석이나 추가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제시한다면, 향후 정책 제언의 활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발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증가가 연금계좌 납입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연구

이경배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본 연구는 2022년「소득세법」제59조의3의 개정으로 50세 미만 거주자도 50세 이상 거주자와 같이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한 것이 연금계좌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정패널자료(15~17차)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패널 토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높을 때 연금계좌에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입한도나 세액공제금액이 높을수록 연금계좌에 더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DID 모형과 PSM-DID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의 변화 전후 모두 50세 이하 그룹이 50세 이상 그룹에 비해 평균적으로 적게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점과 연령에 대한 교차항 추정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제도 확대가 연금계좌 납입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50세 미만 그룹을 연령별로 20, 30, 40대로 세분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해도, 2023년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증가하였으나 저연령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고려할 때, 저연령층도 꾸준히 사적연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외에 다른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제도가 확대된 이후 단일연도 자료만 반영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토론 2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22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50세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던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2023년부터 전 연령에 동일하게 확대한 것은 중요한 정책적 변화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는 정책 확대가 50세 미만 연령층의 연금 납입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책적 유인보다 소득과 자산 등 저축 '능력'이 더 결정적인 요인임을 밝혀냈다. 이는 기존 세제 혜택 중심의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강건한 실증적 증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이중차분모형의 핵심 전제인 공통추세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했으나, 매칭 과정에서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과인 '연금계좌 납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점은 한계를 가진다. 이는 정책의 핵심 대상인 '한계적 개인(marginal individuals)'을 분석에서 배제하고,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광의의 효과(extensive margin effect)'를 측정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를 과소 추정하는 편의(downward bias)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처치 여부(50세 미만 vs. 50세 이상)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득, 자산, 교육수준 등 정책 이전 시점의 사전적 특성(pre-treatment characteristics)을 기반으로 매칭을 재수행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저축 및 투자 결정은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 변수 외에도 관찰하기 어려운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위험 회피 성향, 시간 선호(time preference) 등에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은 이러한 관찰 불가능한 개인 특성이 모델 내 설명 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 가정이 위배될 경우 추정치가 편의될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추가로 분석하여 강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위험 회피 및 시간 선호 관련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직접 포함하거나 성향점수매칭 단계에서 활용하여 누락 변수 편의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50세'라는 명확한 연령 기준을 가지고 있어 회귀 불연속 설계를 적용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이를 연속 변수(running variable)로 설정하여 50세 경계에서 연금 납입액의 불연속적인 변화를 측정하면,

다른 교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정책의 순수한 국소적 평균 처리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분 회귀 불연속 설계(Difference-in-Discontinuities)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정책 시행 전(2021년) 50세 경계에서의 불연속성 크기와 정책 시행 후(2023년) 사라지거나 약화된 불연속성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50세 미만 집단에 대한 혜택 확대가 가져온 순수한 효과를 보다 강력하게 식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라는 중요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비판적인 실증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크다. 본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적 보완은 연구의 결론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정책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 즉 '세액공제를 얼마나 더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세액공제가 과연 올바른 정책 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향후 노후소득 보장 정책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발표 3

주택연금의 미시적 가입 의사결정의 분석

전병욱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가입 현황과 함께 다양한 측면의 가구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측면의 주택연금의 가입 의사결정을 실증분석하였다.

주택연금의 가입 상태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최적의사결정 및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을 반영한 주택연금의 가입 요인 중에서 기본적인 연금의 3층 구조를 통한 소득의 보전액, 가구주의 기대여명, 가입대상 주택의 가격 및 대상자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상자의 위험회피 성향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고령층의 잠재적 소득원천인 주택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해서 대체적으로 합리적 가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적 · 주관적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임의적 판단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설명변수에서 확인되는 주택연금의 가입과 관련한 불충분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낮은 가입비율과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구 자산의 주택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주택연금의 이용 유인과 함께 제약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가구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을 유동화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후자의 결과가 더욱 일반적이고, 이로 인한 선호 부족으로 인해 낮은 사회적 관심과 불완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론 3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

본 논문은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의사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속된다.

저자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단위의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판단 요인도 가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특히 미시 단위의 분석이 드문 상황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 의의가 크다.

다만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가입 연령별 가입 및 해지 현황과 같은 통계량을 추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5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조합에 따라 가입이 언제 시작되는지, 가입자의 연령이 해지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 연구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55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자녀 상속 유인이 가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 유형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통제변수로 반영하거나 표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별 부동산 경기 변동성 역시 주택연금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모형에서 어떻게 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연도별 고정효과만 포함되어 있는 분석에 연도와 지역 더미의 교호항을 추가해 지역 간 시장 변동을 포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의 유형에 따른 유동화 가능성 차이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아파트, 빌라 등 주택유형을 통제변수로 포함해 주택유형별 가입 결정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 방법 측면에서는 확률효과 패널 로짓(Random Effect Panel Logit) 모형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논의가 요구된다. 오차항이 임의효과가 아닌 고정효과로, 설명변수와의 상관성이 있다면 추정치의 일치성이 확보하기 어렵다. 모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넷째,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된 조세·복지 제도 인식이나 주관적 기대여명과 같은 변수들은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비 수준, 납세 및 사회보험 급여 등과의 상관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술 방식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가 제시한 6가지 가설은 기존 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나 주요 변수의 정의가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 변수의 정의를 정리한 표를 제시해 가독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가설, 분석모형, 데이터가 동일한 장에 함께 제시되어 있어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가설·분석모형·데이터를 세부 절로 나누어 제시하면 논문의 구조적 완성도가 한층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는 주택연금 가입 결정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션 II

발표 1

부모의존 성인자녀 현상의 원인과 효과연구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층의 부모의존, 이른바 '캥거루족'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정, 주거비 상승, 고학력화, 가족주의적 정서 등 복합적 요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14~17차(2021~2024년)의 「재정패널(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립 지연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자산이 높을수록 자녀가 캥거루족일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며, 이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독립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캥거루족 경험은 자녀의 향후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년 및 부모 양측 모두의 행복도를 저하시키는 심리·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캥거루족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닌 가족경제, 사회구조,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며, 청년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토론 1

강신혁 | 전남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14~17차(2021~2024년)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를 활용하여 캥거루족의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캥거루족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혹은 주거적 측면에서 독립하지 못한 19~34세 청년들을 의미한다. 14~17차 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을 모두 추정한 뒤,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수행하여 두 분석 결과 중 어느 모형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보였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부모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캥거루족의 원인 부분으로서, 부모 자산보유 수준과 청년들이 캥거루족일 확률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둘째, 캥거루족인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경향이 존재함을 보였다. 셋째, 청년이 캥거루족인 경우 본인의 행복도와 부모의 행복도 모두 낮은 경향을 가짐을 보였다. 이에 기반하여 저자는 캥거루족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자립 실패가 아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청년의 자립 문제는 결국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 세대 간 자산 이전, 고용 및 주거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청년 쉬었음'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의 어려운 노동시장 문제는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문제이다. 특히, 청년이 자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마찰적 요소 때문에 자립 시점이 최적 시점보다 늦춰지게 된다면 이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기간이 증가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확정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한 주제는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선택을 더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현재 분석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표본에서 대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 역시 졸업 시점을 늦추는 결정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표본에 대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강건성 분석 차원에서 남성은 26세나 27세 이후, 여성은 24세 이후 등 4년제 대학 졸업을 염두에 둔 분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복도의 경우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임의효과 모형을 배제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결론에서는 관련된 설명 없이 임의효과 모형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표본기간이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시기를 대상 혹은 포함하여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캥거루족의 대조군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캥거루족은 내생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중차분법과 같이 대조군과 통제군이 엄밀하게 구분될 수는 없다. 다만, 경제학적으로 캥거루족이 아닌 청년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해함으로써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더 엄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부차적인 제언으로, 자산을 분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자산 수준 그 자체를 연속변수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같이 보고한다면 연구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 2

소득 격차 인식과 정부 역할 기대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혜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혜진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승주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부모의 계층 간 소득 격차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 9~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18세 미만 자녀의 사교육비 정보를 추출하고, 부모의 사회·정치 인식 자료와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부모가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과 회의감에 따른 인식이 사교육을 통한 보완 또는 회피 전략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2015년 대비 2023년의 변화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평균 지출이 증가하고, 고지출 구간의 비중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분포적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 간 격차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불안이 점차 구조적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이는 공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정책 체감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더라도, 현실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계층 격차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되는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격차 인식에서 비롯되는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충하거나 조절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은 계층 격차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사교육 의존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교육 소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비전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정책적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제고하는 다차원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2

최인희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사교육비 지출 행태를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만 분석하는 것을 넘어, 부모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정치적 인식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문제의식과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논문의 연구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계층 격차 인식과 정부 정책 기대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계층 격차 인식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 효과를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발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사교육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공감하며, 연구가 더욱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논의점과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의 적절성 문제

본 연구는 재정패널 9차년도부터 1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시계열적으로 동일한 사람을 추적하지 않는 데이터이지만, 동일한 조사 시점의 반복 관측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다. 그러나 데이터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시계열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로 분석하는 방식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시계열 효과 무시**: 매년 반복되는 조사이지만, 시점별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반영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면 특정 연도에 발생한 고유한 효과(예: 주요 교육 정책 변화, 경제 위기 등)를 놓치거나 왜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이 있었다면, 이를 통제하지 않은 채 분석하면 회귀 계수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데이터의 독립성 가정 위반**: 비록 동일 가구원이 아닌 매년 다른 가구원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 가구가 여러 해에 걸쳐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만약 동일 가구가 반복적으로 포함되었다면, 독립 표본의 가정이 위배되어 분석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귀분석 외에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의 대안은 없을지 제언한다. 예를 들어, 연도를 고정 효과로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연도별 추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패널 회귀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기법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데이터의 시계열적 변화를 더 정교하게 포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핵심 변수 '정부 정책 기대 인식'의 측정과 해석 문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정부 정책 기대 인식' 변수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조절 효과이다. 그런데 이 변수의 측정 문항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인식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본인은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희망 또는 기대**: 정부가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기대. 논문에서 해석한 내용과 동일하다.
- **불만 또는 책임 전가**: 현재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계층 격차 문제의 해결 책임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 **체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일 수 없으니, 유일한 대안인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체념적인 인식을 반영할 수도 있다.

만약 응답자의 인식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적 관점에 가까운 것이라면, '정부 정책 기대 인식' 변수는 실제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정책에 대한 회의감'의 대리 변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정부 신뢰가 불안 심리를 완충한다.'고 해석하는 대신,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회의감이 클수록 계층 격차 인식이 사교육비 지출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3. 모형의 단순화에 따른 한계 및 보완 요인 제언

이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중요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소득 등 일부 통제 변인 외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 성취도, 학교 내신성적, 부모의 교육열(주관적 인식), 사회적 비교 심리, 가정의 교육환경 등은 사교육비 지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형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구성된 점은 논문의 설명력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확장한다면, 사교육비 지출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표 3

가계의 소득유형 및 소비유형별 교육비 영향 요인 분석

권초아 |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왔다. 그럼에도 교육비 투자에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 교육이 계층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려는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역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경제·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가구가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교육비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간의 관계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으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경향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가계의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가계가 교육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원인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유형과 소비유형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육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가구주의 최종 학력 및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연령이 학령기에 해당할수록 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노동소득, 자산소득, 생계소비, 사회적 소비, 주거소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구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계층 재생산 현상을 반영하며,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사회구조적 요인(거주지역, 자녀연령, 가구주 최종학력, 가구소득)을 통제한 후에는 복지소득이 교육비 지출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소득의 확대는 공교육 내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본 연구 결과는 교육복지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면, 가계에서 교육비를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성 확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토론 3

이경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략연구팀장

본 논문은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득을 노동·복지·자산 등으로, 소비를 생계·사회적·주거 등으로 유형화하여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다중회귀로 추정한다. 이 접근은 기존 문헌이 주로 총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달리, 소득의 안정성과 구성, 그리고 필수지출의 제약이 교육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피고자 한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크다. 한국의 교육비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증가세를 보여 왔고, 교육비 부담의 누적은 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통로로 지적되어 왔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비를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을 동시에 규명하고자 하며, 특히 '복지소득'과 '주거·준조세 등 비탄력적 지출'이 교육비 결정에 갖는 함의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데이터 구성 측면에서도 재정패널의 분류체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소득·소비 항목을 재배열하고, 최근 정책 환경(예: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으로 인해 교육과 보육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현실을 측정 설계에 담아내려 했다.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자산소득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교육비 지출의 증가와 연결되지만, 복지소득은 통제항 구성에 따라 교육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둘째, 생계·사회적·주거 소비가 증가하는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셋째, 교육·보육비 지표는 강한 양(+)의 왜도와 큰 분산을 보이며, 주거비나 준조세와 함께 상위 분위에 지출이 집중되는 특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평균계수 중심의 해석이 정책적으로 과소·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헌점에 더하여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종속변수의 구성 문제다. 현재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지표는 정책·시장 구조상 중요한 차이를 희석시킬 수 있다. 향후 분석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고, 과목군(일반교과/예체능)과 지출 채널(학원/과외/온라인)을 병렬로 제시하길 권한다. 더불어 지출의 외연적 한계(참여 여부)와 내연적 한계(참여자 지출 규모)를 분리하여 분석한다면, '누가 지출에 참여하는가'와 '얼마나 쓰는가'라는 다른 차원의 정책 타기팅이 가능해진다. 둘째, 분포 전반에 대한 강건성 점검이 필요하다. 로그변환과 평균회귀에 더해 분위회귀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를 병행함으로써 중위수·상위 10%에서의 계수 차이를 비교할 것을 제안한다. 상·하위 분위의 민감도는 윈저라이징이나 커널 재가중 등 극단값 처리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위 분위에 집중된 교육비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어디에서 억제하거나 유도할 것인지를 더 분명히 논의할 수 있다. 셋째, 지금은 교육 및 보육비가 다른 소비유형과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예산합(adding-up)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구조적 수요모형을 보조 분석으로 도입하길 권한다. 현재의 금액(level) 기반 회귀는 해석이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항목 간 대체·보완관계를 포착하기 어렵다. 지출비중(share)을 종속변수로 하여 총지출 대비 교육비 및 보육비 지출 변화를 분석한다면 가격·소득 탄력성과 항목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주거·준조세 같은 비탄력 지출 증가가 교육비를 얼마나 잠식하는가' 혹은 '소득 구성이 바뀔 때 교육비 우선순위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수량적으로 제시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복지소득 계수의 민감성과 식별 문제다. 지역·학력·자녀연령·소득분위 등의

집단 통제 포함 여부에 따라 복지소득의 부호·유의성이 크게 달라지는 점은 내생성 우려를 초래한다. 단순 회귀만으로는 '복지소득이 교육비를 억제한다'는 해석에 신중해야 하며, ① 복지소득×소득분위/지역 같은 상호작용항으로 이질효과를 점검하고, ② 자격 요건 변동, 지역별 산업구조·주택가격 충격 등을 활용한 준실험적 DiD/event study, ③ 외생적 소득충격에 기반한 도구변수(IV)로 식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매개·억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점검하면,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사교육비 지출을 대체했는지'와 같은 정책 메커니즘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 이어진다. 첫째,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확대만으로는 교육비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자산소득의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 주거·준조세 등 비탄력 지출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가계가 교육비에 배분할 수 있는 여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둘째, 복지소득과 교육비의 음(-)의 상관이 정책적 대체효과를 의미한다면, 공교육 내 보완적 서비스(방과후·돌봄·학습지원)의 확충이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구성효과(예: 복지수급 가구의 다른 제약)로부터 비롯된 단순 상관이라면, 앞서 제시한 식별 전략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데이터 정비와 변수 적합도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득·소비의 '구성'을 통해 교육비의 구조적 결정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공헌이 크다. 위의 보완 과제를 반영한다면, 결과의 해석력과 정책 시뮬레이션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특히 세분화된 종속변수, 분포 전반에 걸친 강건성, 예산제약을 반영한 구조 추정, 내생성 완화 설계가 결합될 때, 이 연구는 교육재정·가계정책 논의에서 실증적 기준점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션 III

발표 1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분석 –재정패널자료 기반 로지스틱 회귀 및 DID 분석–

송채은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최민지 |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지원금 정책이 실제 가구의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 분석, 조건부 고정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고정효과 기반 이중차분(DID) 분석이 활용되었다. 특히 2022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정책을 기준으로 정책 도입 전후의 출산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출산지원금의 인과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지원금 수령 여부는 출산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정책 수혜 가구의 출산 확률은 평균 3.34%p 상승하였다. 이는 금전적 유인이 출산 결정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종단자료를 기반으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실증연구로서, 향후 정책의 설계 및 평가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토론 1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규명한 연구다. 특히 2022년 도입된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물 급여인 '첫만남이용권'의 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전국 단위 종단자료로 가구 고정효과를 통제해 시간불변의 이질성을 완화한다. 또한 출산지원금 제도의 변화(2022년)를 활용하여 정책 도입 이후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책 도입 후 실제로 관찰 가능한 시점이 2023년뿐인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관찰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준비) 기간-출산 과정의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2022년에 시행되었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임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정책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찰시간(t+2)이 필요하다.

한편, 대상자 선정의 경우 위험집단에 대한 정의에서 분석대상에 가임 연령 외 가구와 연도를 광범위하게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하는 연령대의 가구로 선정하여 비교하면 대상집단의 효율성이 제고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독립변수로 활용된 '양육(출산) 및 교육지원금'은 '출산'에 한정된 현금 지원을 별도로 조사한 항목이다. 따라서,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① 출산지원금을 변수로 설정하고, 포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① 출산지원금, ② 임신·출산진료비, ③ 기타를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금과 바우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이 혼합되어 정책 노출 측정에 혼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첫만남바우처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출산 축하금 등을 확대하자, 중앙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등의 현금 지원이 지역 간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평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변수인 '해당 연도 출산'은 희귀 사건(DID 분석 결과의 상수 0.0116)인데, 출산과 같이 생애 한번 정도로 발생하는 희귀 사건일 때 선행확률모형(LPM)의 예측/분산 특성, 표준오차의 보수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Ⅳ-7 참조). 통제변수 중에 고용형태 등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 육아휴직 가능 여부 등 고용과 관련된 변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고용형태인지 등 변수의 설명 및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금 '수령' 여부로 '출산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역인과/내생성을 피하기 어렵다. 출산 이후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지만 시간의 우선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의 결정 관계를 추정할 경우 기계적인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대부분이며(약 70%), 병원에서 출산한 후 병원 출생정보 전송을

동의하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이윤진 외, 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따라서 '수령→출산'이 아니라 '출산→수령'경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로지스틱 결과에 근거하여 인과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 투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현금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출산축하금 지원의 확대는 해당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출산 후 전출이 이뤄지면서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성도 발견된다. 즉,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기여했을 뿐 실제 출산율을 제고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방식에서 중앙부처 단위의 첫만남바우처를 도입하면서 평탄화가 이뤄진 효과, 첫만남바우처 도입 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의 조정 효과 등을 실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표 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소득 계층별 세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나영 |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의 에너지세 실질 부담률이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공적 이전이 조세 부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패널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 분위와 정부지원 수급 여부 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였으며, 분포 전반의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 조건부 분위 분석(Quantile Regression)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세는 구조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보이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은 저소득 분위에서 일정 부분 부담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에너지세 부담률은 여전히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정책 타기팅의 정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토론 2

최정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관련 간접세(전기, 도시가스, LPG, 유류 및 연탄, 지역난방, 수도 등 총 여섯 분야임. 이하 "에너지세"로 칭함)에 집중한다.

간접세는 소득 여부나 금액과 무관하게 일괄적(정률적)이어서, 세금 징수도 구매-소비 행위 기준으로만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간접세 중 하나인 에너지세가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어떤 부담 차이를 만드는지 알기 위해 장기 패널을 구축한다. 저자는 2008~2024년 재정패널 데이터(총 254,328

관측치)를 활용해 ① 가구의 에너지 소비 지출액을 해당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나눈 '에너지세 실부담률'을 종속변수로, ② 가구의 소득 분위와 해당 가구의 정부지원 수급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으로는 기초통계량 제시, 패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effect Model), 그리고 조건부 분위 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언급할 수 있겠으며 세 분석 모두 에너지세 실부담률이 가구의 소득 분위 및 정부지원 수급 여부에 따라 상이함을 보이고자 한다.

기초통계량은 에너지세의 역진성을 보여주며 일례로 저소득층(1분위)의 에너지세 실부담률이 0.1441%로 고소득층(10분위, 0.0229%)보다 뚜렷이 높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정부지원이 저소득·중하위 계층의 실부담률을 낮춰주고 상위 계층의 실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동 지원이 에너지세의 역진성을 완화해줌을 보여준다. 다만, 동 완화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인 까닭에 여전히 저소득·중하위 계층의 에너지세 실부담률이 상위 계층의 에너지세 실부담률보다 높은 경향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분위 분석에서는 에너지세 실부담률을 세 개의 분위(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로 나눈 후 각 세 개의 분위에서 가구의 소득 분위가 증가(고소득층) 혹은 감소(저소득층)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세 실부담률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추정 결과, 세 개의 에너지세 실부담률 분위에서 모두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에너지세 실부담률이 감소함이 나타난다. 특히 에너지세 실부담률 상위 집단(3사분위)의 경우, 가구의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세 실부담률 감소폭이 유난히 가파른데 이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회피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세 개의 주요 분석(기초통계량, 패널 고정효과 모형, 조건부 분위 분석) 모두 가구의 소득 또는 에너지세 실부담률을 분위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단순 평균 비교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며, 추정 결과는 가구 소득 및 특성별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세로 야기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세 수입을 활용한 정액 환급 또는 기후배당 제도와 같은 재분배 장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의 소득 수준에 연동되는 보조금 제도와 계절 요인을 반영한 에너지바우처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간접세에 따른 역진성이 추가적으로 더 완화될 것이다. 셋째, 아무리 입증된 제도여도 국민과의 소통이 미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기여가 크다. 그중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장기 패널 구축을 들 수 있겠다. 17개년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동 병합에 있어 다뤄야 할 관측치의 수는 최소 20만개가 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구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병합을 하려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장기 패널을 구축한 것 자체가 하나의 기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해당 데이터셋과 관련된

기초 통계량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제시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17개년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의 최초 관측치 수가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면 병합 과정에서 소실된 관측치를 유추할 수 있게 되기에 본 연구의 결과물이 외적으로도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에너지세 실부담률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경상소득과 에너지 소비 지출액을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평균, 중앙값, 분산을 보여주면 본 연구의 다양한 표나 그림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자녀양육수당 등 총 여섯 가지 정부지원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혜택을 받았을 경우 정부지원($Govit$)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만 받은 A라는 가구도 $Govit$가 1이 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자녀양육수당을 모두 받은 B라는 가구도 $Govit$가 1이 된다. A와 B 두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상이함에도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1로 처리되어 동일하게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섯 가지 정부지원 항목을 각각 더미 변수로 만듦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본문이나 각주에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지원 변수를 $Govit$ 하나로 설정하였다고 짤막하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및 표에 대한 제언인데 이는 참고 차원에서 언급한다. ① 그림 iv-1의 박스 플랏의 위에 위치한 점들이 아마도 이상점으로 판단되는데 간략히 무엇인지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으며, ② 그림 iv-2는 평균 에너지세 실부담률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각 소득 분위별, 혹은 몇 개의 소득 분위별 추이를 보여주어도 될 듯 하고, ③ 표 iv-2의 고정효과(FE)의 경우 α_i나 γ_t의 추정치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며, ④ 표 iv-3에서 정부지원의 효과 추정치라 볼 수 있는 δ도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다.

발표 3

주 52시간제 도입이 근로자 가구에 미친 영향 분석

이지은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NaSTaB)를 이용해 주 52시간제 도입 후 만 60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를 추정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종사자 규모별로 순차 도입된 시기와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처치군과 비교군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가구 지출을 건강과 여가생활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건강 지표인 가구 의료비 지출, 주류 및 담배소비 지출과 외식비, 문화생활비, 여행비 등 여가생활 지출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가구 소득을 재원별로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정책 도입 후 처치군에서 두 형태 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근로시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제를

통해 기대하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본 연구는 현행보다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주 52시간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론 3

김보민 | 경북대학교 부교수

본 논문은 재정패널(NasTaB)자료의 가구를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의 분석은 노동자 개인 단위로 수행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 논문은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참신한 시도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각 개인의 결정은 가구 단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신한 시도를 떠나 본 논문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근로시간 감축,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가 건강이나 개인의 행복, 여가 등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컸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이라는 정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가구별 건강 및 여가에 대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건강에 대한 척도로 의료비, 주류 및 담배 소비 지출액을 사용했고, 여가에 대한 척도로는 외식비, 문화생활비, 여행비를 사용하였다. 이 모두 정성적인 척도가 아니라 정량적인 척도로 해석하기가 용이한 면이 있다.

소득 부분에서는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에 주 52시간제가 끼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분리하여 살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시에 도입되지 않고 사업체 규모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19년 5개 산업을 제외하고 특례업종을 폐기하여 기존 특례업종 해당 산업에도 적용, 2020년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책이 도입되었다. NasTaB의 한계로 인해 처리군과 비교군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2017~2021년에는 처리군을 300인 이상, 비교군을 300인 미만으로 잡고, 2019~2024년에는 처리군을 50인 이상, 비교군은 50인 미만으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의 인과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 52시간 제도는 건강 관련 지출변수와 여가생활 관련 지출변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는 달리 감소되지 않았으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문화생활비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다. 즉 가구의 건강이나 여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일부 경우에는 예상과 다른 부호가 나타났다. 둘째, 가구 근로소득과 가구 투자소득은 흥미롭게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절대적 금액으로도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의 영향을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는데 오히려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논문이 다른 연구와 차별적인 부분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언한다. 첫째, 처치 혹은 처리를 받는 가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불명확해 보인다. 가구주만 일을 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구주의 근로사업장 특성을 통해 명확하게 처리군과 비교군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 외에 다른 가구원이 일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근로에 종사할 것인데 누가 주된 일자리인지 명확히 가를 수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남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된 일자리이고 여성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주된 일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부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가능하다고 하면 처치의 강도를 정의하여 이를 처치 혹은 처리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가구에 대한 정책 인과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둘째, 정책은 강제성이 분명히 있는데 노동시간이 증가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문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질문과 토론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험적 기간(예를 들어 2019년, 300인 이상만 적용되는 경우)에 규제를 받는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를 더 이상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구원은 오히려 초과근무를 더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가구의 총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근로시간 분석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해 본다. 그리고 소득변화에 있어서 양(+)의 효과가 특히 근로소득 부분에서 나타난 점도 설명할 수 있겠다.

셋째, 시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따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2017~2021년에는 처리군을 300인 이상, 비교군을 300인 미만으로 잡고, 2019~2024년에는 처리군을 50인 이상, 비교군은 50인 미만으로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이하 DID)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의 인과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를 모두 통합하여 DID를 추정하면 두 집단의 인과효과가 섞일 수도 있다. 즉 인과효과의 크기라든지 방향성이 다른데 통합함으로써 각 효과가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섞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각 시기와 사업장 규모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단위와 중소기업 단위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기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반대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겪게 되는 변화와 소속된 근로자가 겪을 변화는 이질적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적용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특례

산업 폐지가 기업의 반대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 역시 고려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2017~2021년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특례산업의 폐지까지 고려하여 삼중차분법을 사용했다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해 본다. 왜냐하면 특례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연구자가 이 부분을 따로 연구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션 Ⅳ

발표 1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홍우형 | 동국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2018년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 충격으로 간주하고, 재정패널 10~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가 가구의 문화비 지출 행태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문화비 소득공제의 도입은 가구의 문화비 지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거나, 코로나19의 효과와 사후소득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모두 배제한 분석에서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한 가구의 문화비 지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론 1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

본 연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부로 도입한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문화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경우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동 제도의 일부임에도 문화소비 활성화라는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를 통한 분석의 의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준액 전후에 위치한 근로자 가구의 제도 도입 전후 문화비 지출 비중을 비교하는 이중차분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가구지출 대비 문화비 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소비 증가 및 문화산업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지원이 아닌 효과가 증명된 재정지출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는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특정 지출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제 지출 증가로 이어지려면 소비자가 관련 비용절감 혜택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바우처 등 재정지원의 경우와 달리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비와 세제지원 수혜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며,

소비 시점에 연간 총급여액 기준 충족 여부를 알기도 어려운 점 등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하기에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산업진흥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 및 정책제언에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이 높은 연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관련 정책을 정비함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주제부터 방법론까지 타당성이 높은 연구이나 외부 연구자의 시선에서 몇 가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소비 시점에 총급여액 기준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최종적으로 적용 대상에 속하게 된 경우와 반대로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나 연말에 총급여액을 따져본 결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경우가 존재한다면 처치군과 대조군 구분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란은 회귀계수 추정치를 0으로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정책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해석에 한계로 작용한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건성 분석에서 총급여액 6,500만~7,5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한 분석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한 소득구간에 속한 가구의 지출을 비교하고자 했던 본래 목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전술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한 가지 대안으로 수년간 총급여액의 변동폭이 낮은 가구, 근로시간이 일정한 가구 등 연간 총급여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강건성 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연구 결과를 보완하거나 서술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종속변수를 문화비 지출 금액이 아닌 문화비 지출 비중으로 두었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문화비 지출 비중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론상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처치군과 대조군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소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종속변수와 소득의 관계가 선명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문화비 지출 비중이 아닌 문화비 지출 금액을 종속변수로 둔 분석 결과 또한 제시해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연구 목적상 가구의 문화비 지출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재정패널 자료에서 문화비 지출을 정확히 어떻게 측정하며 어떠한 지출들이 포함되는지, 이러한 지출 범위가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문화비와 일치하는지 등 자료와 관련된 서술을 보완해주면 분석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 소득공제의 지출 증가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총급여액 7천만원 전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른다. 따라서 보다 저소득층에서는 소득공제가 문화비 지출 증가에 실질적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은 다소 강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

발표 2

근로장려금 수급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신동협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 저축, 순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비수급 가구에 비해 총소비지출과 월평균 저축액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순금융자산은 평균 격차는 존재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 항목별로는 식료품비에서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려금이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소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신비에서도 수급 가구의 지출 확대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교통비는 수급 여부에 따른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현금 이전을 넘어 저소득층 가계의 소비 안정과 재정 여력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제도 설계 시 가계의 지출 구조와 자산 형성 경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론 2

전병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EITC)이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 및 저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유인 효과에 집중하였던 것과 다르게, 이 논문은 소비와 저축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근로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와 이와 유사한 비수혜 가구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의 소비와 저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Two-way fixed effect model 및 random effect panel Tobit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교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들의 연간 소비는 약 230만원, 연간 저축은 약 67만원 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다만,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 연구에서 확인된 근로장려금의 효과는 분석에 포함된 두 집단의 동질성이란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책효과를 다루는 다른 연구들에서와 같이 이 연구 역시 근로장려금 수혜가 없는 상황 아래서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들의 소비와 저축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실적 결과(counterfactual outcome)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이 최초 도입된 2009년 선정 기준에서 18세 미만 자녀 여부가 포함된다는 제도적 특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수혜 집단과 비수혜집단을 구성하였다.

수혜집단의 경우 200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들로 선정하고, 비수혜집단의 경우 2009년 당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부양자녀요건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였음에도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가구들 역시 비교를 위한 비수혜집단에 포함하였다. 부양자녀요건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이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는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대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동질성이 실재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주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집단 간 구분이 이루어지는 2008년 및 2009년 시점에 두 집단 간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후 시점에도 동질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 간 동질성에 대한 점검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근로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논의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대상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연평균 소비는 약 230만원, 저축은 약 6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보다 큰 추정치로,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비 및 저축 증가가 관측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소득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저소득층 가구의 한계소비성향과 본 연구의 추정치를 비교해보는 것은 정책효과 해석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비와 통신비 항목에서 소비 증가가 관측되었지만, 이들 항목이 전체 소비 증가의 약 30%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소비 증가가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근로장려금이 가계 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 3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역 공공재 기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연령 및 직업 이질성을 중심으로

강성훈 | 한양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역 공공재 기부 행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0~2023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부 여부는 패널 로짓 모형, 기부 금액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코로나19 관련 외부충격 요인, 사회경제 요인, 그리고 심리·태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진자 수 증가는 특히 비고령층 자영업자의 기부 참여를 유의하게 늘렸으나, 기부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사망자 수 증가는 고령층에서 기부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비고령층 근로소득자는 참여를 늘리고 자영업자는 참여를 줄이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연령과 소득은 기부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심리·태도 요인 중 정부 신뢰는 모든 집단에서 기부 참여를 높였지만, 기부 금액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사회적 신뢰는 기부 참여에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부 금액에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자영업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간선호는 기부 참여를 촉진했지만 기부 금액은 줄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험태도 역시 기부 참여를 늘렸으나 금액은 감소시켰다. 재분배정책 선호는 참여와 금액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상황에서 심리·태도 요인이 기부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전통적 사회경제 변수보다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이 크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토론 3

박벼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외부 충격 요인, 연령·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심리·태도 요인이 지역 공공재 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이 연령 집단과 직업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서브샘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미 있는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 결과 해석과 분석 모형에 관련한 몇 가지 논의점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소득을 통제하였는데, 고정된 소득 수준과 더불어 소득의 변화 또한 고려한다면 더욱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이 동반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감 여부 또한 개인의 기부 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제하거나,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서브샘플 분석을 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절대적인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외에도, 보완적인 변수를 활용한 강건성 검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숫자의 확진자·사망자 수가 주는 심리적 충격은 발생 시점과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첫 사망자가 보고되었을 때의 충격은 누적 사망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하는 이후 시점의 충격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또한 기부 행동의 메커니즘 차원에서, 만약 미디어 노출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개인이 속한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전국 단위 혹은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되는 특정 지역의 상황이 개인의 심리와 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연구자가 통계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통계적 유의도(p-value)를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 점은 일반적 사회과학 연구의 접근과 유사하다. 그런데 연구자의 모델에는 다수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가설검정(Multiple Hypothesis Testing) 문제를 고려한다면 결과의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흔히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20개의 독립변수가 있는 경우, 모든 독립변수가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1개(1/20=0.05)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잘못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onferroni 검정, Holm-Bonferroni 검정, Benjamini-Hochberg 검정과 같은 보정 방법을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의한 결과들이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님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브샘플 분석 과정에서 표본 크기 차이에 따른 표준오차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준오차는 이론적으로 감소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경우 집단 간 표본 크기 차이가 최대 3배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작은 표본 규모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라 하더라도 그 배경에 표본 크기의 한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연구 해석이 보다 균형 있고 풍부해질 것이다. KiPF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국에 관세 부과 경고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미국의 테크 기업(US tech firms)을 겨냥한 디지털세(digital taxes) 또는 규제(regulation)를 가진 국가에 새로운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tech export restrictions)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함[1)]

- 해당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디지털세 및 규제를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미국 기술을 차별하도록 고안된 조치로 언급함
  - 미국의 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디지털세 및 규제가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한다고 비판함
  - 아울러 차별적 조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은 상당한(substantial)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높은 보호 가치가 있는 자국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언급함
- 동 게시물은 최근 확정된 미국과 EU의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trade framework)[2)]에 대해, EU가 공개한 FAQ에서 언급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 EU는 FAQ에서 EU-미국 간 합의는 회원국의 DST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공동 성명에 DST에 대한 어떤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함[3)]
- 트럼프의 대응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DST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보복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1) IBFD, "United States Warns of New Tariffs Against Countries with Digital Services Taxes," 2025. 8.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26_us_2.html, 검색일자: 2025. 9. 4.

2) 2025년 8월 최근 미국과 EU 간 체결된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을 공식화한, 상호적(reciprocal)이고 공정(fair)하며 균형 잡힌(balanced) 협정을 위한 공동 성명임. 관세, 청정 기술, 인공지능, 규제 기준 등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음

3)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US Joint Statement on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2025. 8. 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1974, 검색일자: 2025. 9. 4.

캐나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2025년 8월 22일, 2025년 9월 1일부터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함[4]

- 캐나다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조치와 미국에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미부과로 캐나다-미국 간 자유 무역이 재확립됨
  - 캐나다의 관세 철폐 조치는 미국이 캐나다 수출품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데 따른 것임
  - 미국에서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5.6%로 모든 교역국 중 가장 낮음
  - 캐나다-미국 무역의 85% 이상이 무관세임
  -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유지할 예정임
- 미국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역 및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아일랜드

중소기업 대상 VAT 면세제도 매출기준 확정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5년 8월 5일, 세무지침 eBrief 153/2025를 발표하여, 중소기업(SME)이 선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VAT) 면세제도의 적용기준을 발표함[5]

-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중소기업 간이 VAT 제도를 아일랜드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아일랜드 내 설립된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기준(threshold) 미만일 경우 VAT 등록 의무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만 공급하는 경우: 42,500유로[6]
  - 영세율 원재료로 직접 제조·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2,500유로

4) IBFD, "Canada to Scrap Tariffs on Most US Goods Starting 1 September, Reigniting Free Trade," 2025. 8.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25_ca_1.html, 검색일자: 2025. 9. 8.

5) IBFD, "Revenue Sets Turnover Thresholds for EU Domestic VAT Scheme," 2025.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08_ie_1.html, 검색일자: 2025. 9. 5.

6) 2025년 9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97만원임

- 재화와 용역을 모두 공급하되, 총매출의 90% 이상이 일반 재화 공급인 경우: 85,000유로[7]
- 재화만 공급하는 경우(상기 경우 제외): 85,000유로

● 본 제도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위의 매출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VAT 등록이 의무화됨

● 다만 면세 범위는 공급(output transaction)에만 한정되며, 매입(input transaction)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해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VAT 등록의무가 발생해 면세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밖에도 지침은 등록 절차, 특정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 EU 차원에서의 SME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함께 설명함

독일

GloBE 정보보고서(GIR) 전송을 위한 공식 지정 데이터세트 발표

◆ 독일 재무부는 「최저한세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GloBE 정보보고서(GIRs, GloBE information returns) 전송에 사용되는 공식 지정 데이터세트와 그 데이터세트 설명서를 발표함[8] [9]

● 이번 발표는 필라2 규정에 따른 행정 의무의 일환으로, 관련 기업은 GIRs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공식 지정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지정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함

● 데이터 교환은 XML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디지털 인박스 인터페이스(DIP, digital inbox interface)를 통한 자동화된 절차로 수행됨

7) 2025년 9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794만원임

8)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Bekanntgabe des amtlich vorgeschriebenen Datensatzes und der Datensatzbeschreibung für die Übermittlung der Mindeststeuer-Berichte," 2025. 8.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Internationales_Steuerrecht/Allgemeine_Informationen/2025-08-05-datensatz-datensatzbeschr-mindeststeuer.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 2025. 9. 4.

9) IBFD, "Revenue Sets Turnover Thresholds for EU Domestic VAT Scheme," 2025.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08_ie_1.html, 검색일자: 2025. 9. 5.

이탈리아

의회, 긴급 경제조치 법제화 : 설탕세 시행 연기 등

◆ 이탈리아 의회는 2025년 제95호 긴급 경제조치 법률안을 통해 경제활동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8월 의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하였음[10) 11)]

- 이탈리아 의회는 「2025년 제95호 긴급 경제조치 법률안(Law Decree No. 95/2025)」을 일부 개정하여 법으로 확정하였음
- 해당 법률에는 경제활동과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재정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설탕세 시행 연기) 가당 음료 소비세(imposta sul consumo delle bevande analcoliche edulcorate)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함

– (부가가치세 인하) 미술품, 골동품, 수집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경감세율을 적용함

– (가상자산 과도기적 제도 연장) EU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규정 2023/1114)」 발효 전까지 기존 국내 규제하에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과도기적 제도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스페인

DAC8 지침을 반영한 암호화폐 보고 의무화 초안 발표

◆ 스페인 세무당국은 2025년 7월 28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대상으로 하는 실사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한 암호화폐 보고 의무화의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함[12)]

- 초안은 EU의 DAC8 지침을 스페인 법에 반영하고 기존 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CASP는 고객으로부터 세무 신고서를 받아 세무상 거주지를 확인하고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신고서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함

– CASP의 보고 의무 시점을 정하는 보고 연계 규칙을 도입하고 MiCA 규정에 따른 의무를 포함함

- 해당 규정은 승인 시 공표 다음 날 발효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10) IBFD, "TParliament Enacts Urgent Economic Measures, Including Postponement of Sugar Tax," 2025. 8.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15_it_1.html, 검색일자 : 2025. 9. 4.

11) IBFD, "Italy Introduces Urgent Economic Measures, Including Postponement of Sugar Tax," 2025. 7. 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5-07-04_it_1.html#tns_2025-07-04_it_1, 검색일자 : 2025. 9. 4.

12) IBFD, "Tax Authority Consults on Transposing DAC8 Concerning Crypto Reporting Rules for Service Providers," 2025. 8.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01_es_1.html, 검색일자: 2025. 9. 8.

스웨덴

필라2 관련 추가 개정안 제안

◆ 스웨덴 재무부는 2025년 8월 14일, 필라2 국내법 규정을 추가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가 발표한 최신 행정지침에 부합하도록 스웨덴 법제를 조정하려는 것임[13)]

- 국경 간 구조 내에서 고정사업장(PE), 피지배외국법인(CFC), 도관기업 및 혼성기업 간 소득 및 세금 배분 규정을 신설 및 명확화함
- 이연법인세 계산 규정을 개정하여, 장부가액과 상이할 경우 추가세액(top-up tax) 산정기준에 따른 가치를 적용하도록 함
- 국경 간 손실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명확화함
- 혼성기업 및 도관기업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보고 및 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제고함
- 본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기업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조기 적용할 수 있음

덴마크

2026년 재정법안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5년 8월 29일, 2026년도 재정법안(Finance Bill)을 발표했으며, 복지 투자와 함께 가계 재정 강화 및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소비세 감면 조치를 포함함[14)]

- 기업 환경 개선과 창업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500만덴마크크로네[15)] 한도 내에서 직원의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와 기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커피, 초콜릿 및 과자류에 대한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13) IBFD, "Sweden Proposes Further Amendments to Pillar Two Legislation In Line With OECD's Administrative Guidance," 2025. 8.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20_se_1.html, 검색일자: 2025. 9. 4.

14) IBFD, "Budget 2026: Denmark Plans Tax Reliefs, VAT-Free Books, and Reduced Electricity Tax," 2025. 9.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9-02_dk_1.html, 검색일자: 2025. 9. 4.

15)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8,690만원임

- 아동·청소년·성인의 도서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쇄본·전자책·오디오북을 포함한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면 폐지하며, 이는 아일랜드·스웨덴·노르웨이 등 이미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조치임
- 농촌 부동산 및 할당 정원(allotment gardens)[16]의 과세평가 방식을 조정하고 세부담을 완화함
- 전력세를 EU 최저 수준인 킬로와트시(kWh)당 0.008덴마크크로네[17]로 인하하여 2026년과 2027년 모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함

핀란드

2026년 예산안 발표

◆ 핀란드 재무부는 2025년 8월 8일, 2026년 예산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동 안건은 9월 1~2일 양일간 예산협의(budjettiriihi)를 거쳐 9월 3일 정부가 최종 결과를 발표함[18]

- 정부는 재무부 초안에 포함된 세제 개정 조치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2026년도 예산안 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양한 기업 보조금(business subsidies)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함[19]

◆ (법인세)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주식 교환을 통한 배당과세 회피 방지, 가상자산 보고의무(DAC8)를 도입함

- 법인의 기부금 공제대상이 기존의 대학·고등교육기관에서, 국세청이 승인하는 과학·예술·문화유산·청소년·체육·아동 관련 협회·재단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됨[20]
- 배당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 주식 교환(artificial exchange of shares)을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됨
-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 및 거래 중개인에게 신규 보고의무(DAC8 규칙)가 부과됨

16) 도시 근교에 소규모 필지를 시민에게 임대·분양하여 여가·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원을 의미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주택용 부동산과 달리 토지 가치만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적용됨

17)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4원임

18) IBFD, "2026 Finnish Budget Proposal Introduces DAC8 Crypto Rules, Amends Corporate Donation Deductions and Inheritance Tax Relief," 2025.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5-08-08_fi_1%23tns_2025-08-08_fi_1, 검색일자: 2025. 9. 4.

19) IBFD, "Government Announces Results of 2026 Budget Meeting," 2025. 9.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9-03_fi_1.html, 검색일자: 2025. 9. 4.

20) IBFD, "Ministry of Finance Opens Consultation on Exempting Legal Fees Paid by Employers, Expanding Deductibility of Donations," 2025.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5-05-19_fi_1%23tns_2025-05-19_fi_1, 검색일자: 2025. 9. 4.

◆ (개인소득세) 노동조합 회비 공제를 폐지하고,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 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공제 혜택을 폐지 및 조정함[21]

-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대해 노동조합 회비 공제[22]가 폐지됨
- 저·중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경감됨
- 최고 과세구간의 한계세율은 약 52%로 하향 조정됨
-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하되, 상위 3개 구간은 제외됨
- 고액연금에 대한 추가세율이 인하됨
- 재택근무(home office) 공제와 자전거 복지혜택(bicycle benefit)[23]은 폐지됨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추가 확대됨
- 해외유입 근로자의 세율은 25%로 인하되며, 자국민 귀국 시에는 별도의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됨

◆ (상속·증여세) 과세최저한을 상향하고 납부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함

- 상속세 과세최저한을 현행 2만유로[24]에서 3만유로[25]로, 증여세 과세최저한을 5천유로[26]에서 7,500유로[27]로 각각 상향함
- 상속세 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공식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수준으로 인하함
- 가정용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4천유로[28]에서 7,500유로[29]로 상향함
- 미성년 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업승계 감면이 적용되도록 확대함

◆ (부가가치세) 감면세율[30]을 인하하고, 공영방송 서비스에도 감면세율을 적용함

- 기존 14%의 감면세율을 13.5%로 인하하고, 공영방송 서비스에 대해 13.5% 감면세율을 적용함

◆ (기타 세목) 주세·물품세·광업세 조정함

-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주세)가 물가연동(indexed) 방식으로 개편됨
-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됨
- 광업세(mining tax)가 인상되어 금속광물은 과세표준 대비 0.6%에서 2.5%로, 기타 광물은 톤당 0.20유로에서 0.60유로로 각각 상향됨[31]

21) IBFD, "Finance Ministry Opens Consultation on Amendments to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2025. 5.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5-06-23_fi_1%23tns_2025-06-23_fi_1, 검색일자: 2025. 9. 4.

22) 핀란드 세법상 노동조합 회비는 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음

23) 핀란드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전거 복지혜택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음

24)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44만원임

25)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66만원임

26)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1만원임

27)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16만원임

28)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48만원임

29)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16만원임

30) 핀란드 VAT 표준세율은 25.5%이며, 기존에는 14%와 10%의 감면세율을 운영하고 있었음

31) IBFD, "MoF Opens Consultation on Increasing Mining Tax," 2025. 6.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5-06-25_fi_1%23tns_2025-06-25_fi_1, 검색일자: 2025. 9. 4.

일본

유류세 잠정세율 적용 폐지에 합의

◆ 일본 정부는 2025년 7월 30일,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휘발유세 잠정세율의 적용을 폐지하기로 합의함[32]

- 현재 일본의 휘발유세는 잠정세율이 적용되어 리터당 53.8엔[33]이며, 여기에 석유 및 석탄세, 지구온난화세 등 리터당 2.8엔[34]의 부가세가 추가된 후 10%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구조임[35]
-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동맹이 이끄는 집권 연정은 일본 입헌민주당, 일본혁신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과 잠정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휘발유세에 적용되던 잠정세율을 폐지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잠정세율 폐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 5천억엔[36]의 세수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인도

소득세법의 대대적 개정

◆ 인도 정부는 2025년 8월 22일, 「소득세법, 2025(Income Tax Act, 2025)」을 공식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37]

- 해당 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온 기존 「소득세법」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인도의 직접세 체계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됨
  - 이번 개정은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4,500쪽 분량의 보고서와 2만여 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어 세제 체계의 단순화와 명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8월 11일 인도 하원(Lok Sabha)을 통과한 후 2025년 8월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32) Taxnotes, "Japanese Parties Agree to End Decades-Old Provisional Gas Tax," 2025. 7. 31.,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legislation-and-lawmaking/japanese-parties-agree-end-decades-old-provisional-gas-tax/2025/08/04/7swlq, 검색일자 : 2025. 9. 4

33) 일본 휘발유세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28.7엔(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0원)이나, 잠정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25.1엔(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6원)이 더해져 총 53.8엔(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6원)임

34)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원임

35) The Asahi Shimbun, "Political parties agree on gasoline tax cut plan, details pending," 2024. 12. 12.,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547628?msockid=2499f1012d816aa11fa6e4042c076b25, 검색일자 : 2025. 9. 4.

36)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조 994억원임

37) INDIA BRIEFING, "India's New Income Tax Act, 2025 Notified: Key Changes and Implementation Timeline," 2025. 8. 22., https://www.india-briefing.com/news/income-tax-act-2025-implementation-guide-39140.html/, 검색일자 : 2025. 9. 4.

- (새 과세체계, Clause 202(1)) 개인·힌두교도 가족(HUF)에 적용되는 단순화된 세율·구간 신설
- (소득세 환급, Section 87A)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을 대상으로 환급 한도를 최대 6만루피[38]까지 확대(단, 장기양도소득은 제외)
- (퇴직연금 공제 명확화) 적격기금 일시 퇴직연금에 대한 공제 규정 신설
- (규제 완화)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대상 대체최저세(AMT) 부과 폐지, 자선신탁 규제 완화, 이전가격 규정 정비

-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무행정 개선) 기한 후 신고에도 환급 허용, 세부담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NIL-TDS) 신설
- (부동산 과세 합리화) 공실 주택 가상임대료 과세 폐지, 임대차 이자 공제 확대
- (법령 정비) 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개발법(MSME Act)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모순 규정 삭제, 용어 및 번호 체계 개선

호주

공정성·투자·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조세개혁 시사

◆ 호주 재무장관은 2025년 8월 19~21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경제개혁 원탁회의(Economic Reform Roundtable) 이후 공정성, 투자 인센티브,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체계적 조세개혁 접근을 제시함[39]

-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는 회의 셋째 날에 이루어졌으며, 호주 조세체계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기업 투자 지원,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됨
-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임

- (근로자에 대한 공정성) 세대 간 형평성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와 소득 분배의 인지된 불균형을 해소
- (투자 인센티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 확충과 생산성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세체계 구축
- (단순성과 지속가능성) 구조적 재정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필수 공공서비스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간소화(streamlining)

38) 2025년 9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만원임

39) IBFD, "Australia Signals Targeted Tax Reform with Focus on Fairness, Investment, Sustainability," 2025. 8.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22_au_1.html, 검색일자: 2025. 9. 4.

- 이러한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는 향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재무장관은 도로 사용료 부과, 미소관세(nuisance tariffs) 철폐와 같은 일부 과제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OECD

글로벌최저한세 중앙 입법 기록부에 16개국 추가

◆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lclusive Framework)는 2025년 8월 21일, "경과 적격 지위를 가진 중앙 입법 기록(Central Record of Legislation with Transitional Qualified Status)"을 업데이트하며 16개국의 필라2 조항을 추가함[41]

- 이 기록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따라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을 도입했는지를 임시적으로 평가한 기록으로, 자격 검토 절차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각 국가의 법률들이 등재됨
  - 다만 2024년 제정된 모든 관련 입법을 완전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 자기 인증(self-certification) 및 검토 완료된 입법만을 포함함
-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브라질, 지브롤터, 인도네시아, 맨섬, 일본, 저지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16개국임
- 기록부의 전체 목록은 OECD 웹사이트[42]에서 확인 가능함

40) 관세액이 너무 적어 과세에 드는 비용이 과세액 이상인 경우와 아무런 보호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관세로 여기서는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준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되는 관세를 의미함

41) IBFD, "OECD Adds 16 Jurisdictions to Qualified Status Central Record for Global Minimum Tax Rules," 2025. 8.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8-21_o2_1.html, 검색일자: 2025. 8. 29.

42) OECD, "Central Record of Legislation with Transitional Qualified Status," 2025. 8. 18.,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global-minimum-tax/central-record-of-legislation-with-transitional-qualified-status.html, 검색일자: 2025. 8. 29.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 EU 집행위원회, 2028~2034 EU 장기 예산안(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1] 최종안 확정(2025. 9. 3.)[2]

-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7월에 약 2조유로 규모의 2028~2034 EU 장기 예산안을 발표[3]하였으며, 추가로 9월에 장기 예산안의 2차 패키지를 채택해 차기 EU 장기 예산안 편성을 완료함[4]
- (주요 내용) 장기 예산안의 2차 패키지는 단일 시장 및 세관 프로그램, 사법 프로그램, 원자력 안전 프로그램 등 7개 부문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을 구체화함

– (단일 시장 및 세관 프로그램) 단일 시장 및 세관 프로그램에 현 EU 장기 예산에 편성된 수준의 두 배에 이르는 62억유로를 배정하고 기존의 다수 프로그램[5]을 하나의 일관된 전략으로 통합

▶ 소비자 보호 강화, EU 공통 표준 정비, 세관, 과세, 탈세 방지 분야의 행정 부담 완화, 공식 유럽 통계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

– (사법 프로그램) 사법 프로그램에 현 EU 장기 예산에 편성된 수준의 두 배를 초과한 약 8억유로를 배정해 민·형사 사법 공조, 사법 연수,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사법 시스템 디지털화 지원, 사법부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지원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 Euratom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에 2032년까지 약 67억유로를 지원할 예정

▶ 원자력 안전·보호,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력 공학의 비전력 분야 적용 등의 개선 및 지원

▶ ITER 사업[6]의 EU 분담금 40억유로를 포함

---

1) EU의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는 7개년 재정계획을 담은 EU의 장기 예산으로 EU 우선순위에 지출 가능한 연간 예산의 최대 한도를 규정함

2)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completes proposal for the 2028-2034 EU long-term budget," press release, 2025. 9.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011, 검색일자: 2025. 9. 8.
EU 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xt long-term budget(second package of proposals)," 2025. 9.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2012, 검색일자: 2025. 9. 8.

3)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5년 7월호 또는 EU 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 원문(EU 집행위원회, "An ambitious budget for a stronger Europe: 2028-2034," press release, 2025. 7.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47)을 참고할 수 있음

4) 9월에 발표한 차기 장기 예산안 2차 패키지 관련 보도자료에서 7월에 발표한 장기 예산안 대비 예산 총액 변동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으며 약 2조유로 규모로 총액을 명시하고 있음

5) 단일 시장 프로그램(Single Market Programme), 세관 프로그램, 세관 관리 장비 프로그램, 조세 협력 프로그램(Fiscalis Programme), EU 사기 방지 프로그램 등 5개 기존 프로그램을 통합

6)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공동 개발사업

- (원자력 안전 협력 및 해체 기금)[7] 기존의 원자력 안전 협력 기금과 해체 프로그램을 통합해 10억유로의 예산 투입
- (이그날리아 원전 해체 지원 프로그램(Ignalina programme)) 리투아니아의 이그날리아 원전 해체 지원 프로그램에 약 6억 8천만유로를 배정하여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에서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
- (EU 특별 해외 영토 지원) 그린란드를 포함해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13개 EU 특별 해외 영토(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 지원에 현재 예산의 두 배 수준인 10억유로를 배정
- (5차 페리클레스(Pericles V) 프로그램) 유로화 위조 방지를 위한 페리클레스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시정연설[8] 발표(2025. 9. 10.)[9]

- (성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임 첫해인 2024년에 국방, 경쟁력,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과제) 불확실한 시기에 안보를 보장하며 신뢰를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유럽은 더욱 독립적이어야 함
  - (국방) 러시아 침략은 유럽이 안보와 국방을 강화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주었고, 방위백서(Readiness 2030 Plan)와 SAFE를 통해 추가 투자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경쟁력) 경쟁력과 일자리 의제에 중심을 두어 2025년 1월 발표된 5년간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10]과 실행 계획(Draghi Report)[11]을 바탕으로 혁신, 청정 산업, 디지털 기술, 순환 경제를 육성하고 규제를 간소화할 예정
  - (기후 및 환경) 기후 변화와 대형 산불 같은 위협에 대응해 기후 및 환경 목표로 나아가는 동시에 기후 회복력과 적응 노력을 강화함
  - (삶의 질) 생활비와 에너지 가격 상승, 주거 문제 해결과 빈곤 퇴치를 위한 이니셔티브 강화, 농촌 공동체 및 미래 지향적 농업을 지원

---

7) Instrument for Nuclear Safety Co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8) 매년 9월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 의장이 유럽의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1년의 정책 우선순위, 과제들을 제시하는 공식 연설

9) EU 집행위, "State of the Union 2025," 2025. 9. 10.,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state-union/state-union-2025_en, 검색일자: 2025. 9. 22.
_____, "State of the Union 2025: main initiatives," 2025. 9. 10.,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state-union/state-union-2025/main-initiatives_en, 검색일자: 2025. 9. 22.

10)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2024. 9)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EU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혁신 격차 해소, 경제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및 의존도 축소)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추가 방안을 제시함(EU 집행위, "Competitiveness compass,"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eu-competitiveness/competitiveness-compass_en, 검색일자: 2025. 9. 23.)

11) 생산성 저하, 인구 구조 변화,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유럽의 장기적인 번영에 위협이 가해지는 동시에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은 전례없는 수준의 투자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9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에게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2024년 9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25년 1월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의 분석을 기반으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EU 집행위, "The Draghi report on EU competitiveness,"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eu-competitiveness/draghi-report_en#paragraph_47059, 검색일자: 2025. 9. 24.)

- (안보) 조직범죄 대응 법률 마련, 유럽 국경·해안경비대 강화, 에너지 공급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추진하고, 동시에 안보 위협과 정보 조작에 대응할 예정
- (무역·협력) 미국과의 무역 합의 및 지중해 협정[12]과 같은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
- (EU 장기 예산) EU의 핵심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우선순위) 과제를 바탕으로 집행위가 2025~26년에 추진할 여섯 가지 실행계획을 제시함

- (경쟁력 강화) 단일시장 현대화, 규제 간소화, 혁신·디지털 기술 육성, 자본 접근성 확대
- (안보 및 방위) 국경 관리와 조직범죄 대응, 기반시설 보호를 포함한 유럽 방위체제 발전
- (사회적 공정성) 주거·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빈곤 퇴치, 농촌 공동체와 미래 지향적 농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와 성평등 강화
- (삶의 질 개선) 기후 변화 대응과 회복탄력성 강화, 식량 안보, 물·자연 보호
- (민주주의 및 가치) 법치와 언론 자유, 반부패 전략, 디지털 공정성, 사이버 괴롭힘 대응
- (글로벌 역할 강화) 미국·인도 등과의 무역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지중해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IMF

◆ IMF, 연례협의를 위한 한국 방문 및 예비조사 결과[13] 발표(2025. 9. 23.)[14]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임

● 한국은 불확실성 감소와 완화적 정책(accommodative policies)에 힘입어 2025년 경제성장률은 0.9%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내수 회복과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 그리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다른 품목의 수출 부진을 상쇄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2026년에는 불확실성 감소, 완화정책의 전반적인 효과, 기저효과로 인해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25년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하락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12) EU가 무역·에너지·교육·기후·안보와 같은 분야에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계획

13) 국제통화기금(IMF) 팀은 2025년 연례협의를 위한 논의를 위해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음. 예비조사 결과는 국가를 방문한 IMF직원들이 작성한 견해이며, 본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IMF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이후 논의 및 승인을 거쳐 최종 연례협의 결과로 발표함

14) IMF, "IMF Staff Completes 2025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2025. 9. 2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9/23/pr-25308-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5-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5. 9. 24.

- 성장을 뒷받침하고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및 선별적 금융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내수 활성화, 대외 회복력 강화,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가 핵심과제임

OECD

◆ OECD,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운영(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발표(2025. 9. 18.)[15]

- OECD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운영(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는 정부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로, AI가 정부의 11개 핵심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① 세무행정, ② 공공 재정 관리, ③ 법규 제정 및 집행, ④ 공무원 제도개혁, ⑤ 공공조달, ⑥ 부패방지 및 공공 청렴성 증진, ⑦ 정책평가, ⑧ 시민참여 및 열린 정부, ⑨ 공공서비스 설계 및 제공, ⑩ 법집행 및 재난위험관리, ⑪ 사법행정 및 사법접근성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공 재정관리 분야에서 AI는 주로 내부 프로세스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 스웨덴 국가재정관리청(ESV)의 GDP예측 애플리케이션 활용, 프랑스 세무기관(DGFiP)의 AI기반 "경고시스템" 활용, 브라질 국가재정국(STN)의 AI 도입을 통한 지방정부 지출 분류 등

– (주요 위험)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는 잘못된 재정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안 위협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

– (미래 방향과 주요 과제) 현재 공공재정 관리 분야에서 업무자동화 및 예측적(predictive) AI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목표 달성이나 위험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처방적(prescriptive) AI 활용으로의 전환이 필요

◆ OECD,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Finding the Right Balance in Uncertain Times' 발표(2025. 9. 23.)[16]

※ OECD는 연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회원국, G20에 대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3월과 9월에는 중간 업데이트(Interim Economic Outlook Report)를 발표함

15)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ate of Play and Way Forward in Core Government Functions*, OECD Publishing, Paris, 2025. 9. 18., https://doi.org/10.1787/795de142-en., 검색일자: 2025. 9. 19.

16) OECD,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ate of Play and Way Forward in Core Government Functions*, OECD Publishing, 2025. 9. 23.,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interim-report-september-2025_67b10c01-en.html, 검색일자: 2025. 9. 24.

- (경제전망) 관세 인상과 지속적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무역이 둔화되면서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2.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선제적으로 진행된 조치가 종료되고 더 높은 관세율과 여전히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위축시키기 때문임
  - ▸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은 2025년 1.8%, 2026년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기술 분야의 강한 투자 성장은 높은 관세율과 순이민 감소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전망
  - ▸ (유로지역) 연간 GDP 성장률은 2025년 1.2%, 2026년 1.0%로 전망됨
  - ▸ (중국) 연간 GDP 성장률은 2025년 4.9%에서 2026년 4.4%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선제적인 생산 활동이 끝나고, 더 높은 관세가 발효되며,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
  - ▸ (한국) 연간 GDP 성장률은 2025년 1.0%에서 2026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의 경기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
- (인플레이션 전망) G20 경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은 2025년 3.4%에서 2026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은 2.6%에서 2.5%로 소폭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위험) 양자 관세율의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발 및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재정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정책권고) 국가들은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역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감독 및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 또한, 미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출 억제, 예산 재분배,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

미국

예산·결산 등

◆ 관리예산처(OMB), 202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업데이트 전망(Mid-Session Review, MSR) 발표 (2025. 9. 5.)[17]

- (경제전망) 올해('25년) 실질성장률은 전년(실적) 대비 1.8% 증가하며, 2026년에는 3.0% 증가 전망
  - (물가) 올해('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실적) 대비 0.5%p 하락한 2.5%, 2026년에는 2.2%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2.2%를 유지할 전망

17) OMB, "Mid-Session Review," 2025. 9. 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7/msr_fy2025.pdf, 검색일자: 2025. 9. 17.

표 1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	2035년
	실적	전망					
실질성장률[1]	2.8	1.8	3.0	3.1	3.1	...	2.9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2]	3.0	2.5	2.2	2.3	2.2	...	2.2
실업률[3]	4.0	4.1	3.9	3.7	3.7	...	3.7
금리(91-Day Treasury Bills)[3]	4.0	4.1	3.9	3.7	3.7	...	3.7

주 경제 지표 수치는 2025년 7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전망치
1) Real, Chained(2017) Dollars
2) 계절 조정, 전년 대비 증가율
3) 연평균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2025. 9. 5., Table 2, p. 6

- (실업률) 올해('25년) 실업률은 전년(실적) 대비 0.1%p 상승한 4.1%, 2026년에는 3.9%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3.7%를 유지할 전망
- (금리) 2024년에 5.0%를 기록한 금리(단기 채권[18] 기준)는 이후 올해('25년) 4.1%로 하락 후, 내년('26년)에 3.8%까지 지속 하락추세를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3.3% 전망

● (재정전망) 올해('25년) 재정적자는 전임 정부 말 전망 수치[19] 대비 2,870억달러 감소한 1조 8,250억달러, 내년(FY2026)에는 기준선 대비 3,520억달러 감축된 2.2조달러 전망[20]

- 트럼프 감세법안으로 불리는 OBBB[21] [22]법안 통과(2025. 7. 3.)와 상호 관세가 재정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내용) OBBB 법안 통과로 인한 의무지출 개혁 및 상호관세로 인한 관세 수입 증가

- (OBBB 효과) 향후 10년동안 메디케이드, 학자금, 영양보충지원제도(SNAP) 등의 조정을 통해 약 1.9조달러 규모의 의무지출 감축 전망
- (관세 효과) 2025년 초부터 7월까지 상호 관세 정책의 효과로 총 관세 수입이 1,360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 향후 10년간 약 5조달러의 관세 수입이 전망되는바, 이는 기존 무역 활동에서 징수되던 수입(기준선 관세 수입) 약 0.9조달러 및 상호관세 부과를 통한 추가 관세 수입 약 3.9조달러를 합산한 수치

18) 91-Day Treasury Bills

19) MSR은 일반적으로 2월에 발표되는 대통령 예산안의 수치를 기준으로 이후 업데이트 상황을 반영하여 7월에 발표되지만, 올해는 정권 교체기로 종합적인 대통령 예산안 발표가 부재(재량지출만 발표, 의무지출은 추정은 없음)함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MSR은 예산 기준 수치를 전임 정부 말에 전망된 수치(TCJA 주요 감세 조항 영구화를 전제로 한 적자 전망)로 적용함

20)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9월호 참고

21) One Big Beautiful Bill(P.L. 119-21)의 공식 명칭이며,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통과된 TCJA의 주요 감세 조항을 영구화

22) OBBB법의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7월호 참고

◆ 의회, 2026회계연도 임시 세출예산안(H.R. 5371) 최종 부결(2025. 9. 19.)[23]

- (배경) 2025년 10월 1일에 2026회계연도가 개시되나, 현재(2025. 9. 19. 기준) 12개 분야 모두 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음
  - 이에 의회 하원은 11월 21일까지 유효(효력 기한)한 임시 세출 예산을 통과[24]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부결[25]
- (예산안 최근 현황) 의회 하원은 2개 분야(국방, 에너지·수자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의 완료[26]하였으며, ① 농업 ② 입법부 분야 법안은 군사시설·재향군인 분야와 병합하여 진행 중
-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과는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지만, 예산안 협상 교착으로 인해 셧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언급[27]
  - 야당인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2025년 말 만료)으로 도입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28] [29]을 영구화 및 메디케이드 등 최근 의료 지출 삭감 복원을 요구하고 있음[30]
  - 여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한시적인 임시 예산안에 기본적인 예산 운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요구(riders)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예산안 심의 진행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

기타

◆ 의회예산처(CBO), 2025~2028년 경제전망: CBO의 시각(Current View of the Economy) 보고서 발표(2025. 9. 12.)[31] [32]

- (개요) CBO는 통상 매년 1월, 7~8월에 10년 단위의 정규 예산·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번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단기 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
- (전망 주요 변화 요인) 본 보고서는 2025년 1월 17일에 발표된 전망 이후 발생한 연방 정책 및 경제 상황의 주요 변화 요인(① OBBB법, ② 관세 인상, ③ 순이민자 감소)을 반영

23)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6," 2025. 8. 8., https://www.congress.gov/crs-appropriations-status-table/2026, 검색일자: 2025. 8. 18.

24) House Clerk,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281," 2025. 9. 19., https://clerk.house.gov/evs/2025/roll281.xml

25) U.S. Senate, "Roll Call Vote 119th Congress - 1st Session," 2025. 9. 19., 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votes/vote1191/vote_119_1_00528.htm

26) 병합되어 진행 중인 농업, 입법부 등 2개 분야는 정책 조율 단계

27) Washington Post, "Bill to avert government shutdown stalls in Senate as Democrats demand talks," 2025. 9. 19.,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5/09/19/house-vote-avert-government-shutdow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9. 22.

28) 바이든 정부에서 입법된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은 2021~2022년 동안 ACA(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금(Premium Tax Credits, PTC)을 대폭 확대. 소득 상한선(원래 연소득의 400% FPL 이상이면 지원 불가)을 폐지 → 이후, 2022 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 2025년 말까지 연장(Tax Policy Center, "What are premium tax credits?," 2024. 1., https://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what-are-premium-tax-credits, 검색일자: 2025. 9. 22.

29) IRS, "The Premium Tax Credit - The basics," 2025. 8. 13., https://www.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families/the-premium-tax-credit-the-basics, 검색일자: 2025. 9. 23.

30) New York Post, "Democrats' $1.5 trillion demand to keep the gov't open sets a new record for gall," 2025. 9. 19., https://nypost.com/2025/09/19/opinion/democrats-1-5-trillion-demand-to-keep-the-govt-open-sets-a-new-record-for-gall/?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9. 22.

31) CBO, "CBO's Current View of the Economy From 2025 to 2028," 2025. 9. 12., https://www.cbo.gov/system/files/2025-09/61236-Economy.pdf, 검색일자: 2025. 9. 15.

32)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9월호 참고

● (연도별 전망) 지난 1월 전망 대비 대체로 유사한 수준에서 연도별 소폭 등락이 전망되며, 감세법 정책·관세·이민 효과 누적으로 2028년 말 실질 GDP 규모는 약 0.1%p 높을 것으로 전망

– (2025년) 실질성장률은 2025년 1월 전망 대비 0.5%p 하락 전망 - 신규 관세 및 순이민 감소의 부정적 효과가 올해(2025년)에 입법된 트럼프 감세법(OBBB)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

– (2026년) 실질성장률은 2025년 1월 전망 대비 0.4%p 상승 전망 - 성장 둔화 요인인 순이민 감소의 영향보다 트럼프 감세법의 성장 견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전망

▶ 또한, 높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waning)되면서 공급망이 더 높은 관세에 적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경제 성장에 완만한(modest) 수준의 기여 전망

– (2027~2028년) 실질성장률은 2025년 1월 전망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순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축소 효과와 트럼프 감세법의 단기 수요 확대 효과 약화가 성장의 제약(drag)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단, 높아진 관세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가 성장 제약 요인을 부분적으로 상쇄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4.25~4.50% → 4.00~4.25%) 결정(2025. 9. 23.)[33]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2025년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인하

– 경제성장, 물가, 노동시장, 유동성 정책,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미국 2025년 9월 FOMC 회의록 주요 항목 변화**

항목	FOMC: 2025년(6. 18.~19.)	FOMC: 2025년(7. 29.~30.)	FOMC: 2025년(9. 16.~17.)
경제성장	• 견고한(solid pace) 성장 • 전망의 불확실성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상반기 성장세 둔화(moderated) • 전망의 불확실성 높은 수준 유지	• 자구 변화 없음
물가	• 다소 높은 수준	• 자구 변화 없음	• 인플레이션 상승, 다소 높은 수준 유지
노동시장	• 견고	• 자구 변화 없음	• 고용 증가세 둔화
실업률	• 낮은 수준	• 자구 변화 없음	• 소폭 상승, 낮은 수준 유지
추가 조정	• 추가 조정 시기(timing)와 정도(extent)를 고려	• 자구 변화 없음	• "시기와 정도" 문구 삭제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9. 17.

33)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9. 17.,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0917a1.pdf, 검색일자: 2025. 9. 23.

일본

◆ 일본 재무성, 2026회계연도[34] 예산요구액 발표 (2025. 9. 3.)[35]

- (개요) 예산요구액은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개산 요구액'과 물가대책을 포함한 중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전년도 당초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할당할 수 있는 '요망액'의 합계를 의미[36]
- (2026회계연도 예산요구액) 일본의 2026회계연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7조 2,476억엔(6.3%) 증가한 122조 4,454억엔 규모
  -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인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3조 3,423억엔(4.9%) 증가한 71조 4,494억엔 규모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전년 대비 2,633억엔(1.4%) 감소한 18조 6,096억엔 규모
  - 국채 상환 및 이자 지불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채비는 전년 대비 4조 1,686억엔(14.8%) 증가한 32조 3,865억엔 규모

표 3 **일본의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단위: 억엔, %)

구분	전년도 예산액	2026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개산요구액(A)[1]	요망액(B)	예산요구액(A+B)	증감액	증감률(%)[3]
일반세출[2]	681,071	687,081	27,413	714,494	33,423	4.9(6.5)
지방교부세·교부금	188,728	186,096	-	186,096	-2,633	-1.4(1.9)
국채비	282,179	323,865	-	323,865	41,686	14.8(7.0)
합계	1,151,978	1,197,042	27,413	1,224,454	72,476	6.3(5.9)

주 1)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함. 출처: 藤井 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5. 9. 24.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괄호안의 수치는 2024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의 증감률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8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5. 9. 3., p. 1 바탕으로 재구성

34) 일본의 2026회계연도는 2026. 4. 1.~2027. 3. 31.

35) 일본 재무성, 「令和8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5. 9. 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6/sy250903.pdf, 검색일자: 2025. 9. 23.

36) 일본 재무성, 「令和8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ついて」, 2025. 8. 8.,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6/sy250808a.pdf, 검색일자: 2025. 9. 23.

독일

◆ 독일 연방정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지원 조치 승인(2025. 9. 3.)[37]

● 독일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가격 인하 조치를 승인

– 「에너지세법 및 전기세법」[38] 개정에 따라 제조업, 농업, 임업 분야의 기업은 EU 최소세율 수준(0.5유로/MWh)[39]까지 영구 인하된 전기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도모

– 또한 기후변화기금(KTF)을 통한 송전망 이용료 인하 및 가스저장 부담금 폐지로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 송전망 이용료는 연간 65억유로, 2026~2029년 기간 동안 총 260억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송전망 운영사에 지원할 예정이며, 한 가구당 연간 최대 100유로를 절감

▶ 가스저장부담금은 2025년 말 기후변화기금에서 34억유로를 투입하여 가스저장부담금 계정(Gasspeicherumlagenkonto)에 상계하며, 2026년부터 가스저장부담금 부과를 폐지하여 한 가구당 연간 약 50유로 절약 효과

◆ 독일 연방정부, 제30차 보조금 보고서(Subventionsbericht)[40] 승인(2025. 9. 3.)[41]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연방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에 대한 보고서이며, 보조금의 규모는 2023년 450억유로에서 2026년 778억유로로 확대될 예정이며, 보조금액의 약 90%는 환경 및 기후보호 목표 달성에 사용

– 보조금 규모의 확대는 주로 재생에너지법(EEG) 재정지원에 기인하며, 재생에너지법 관련 재원조달을 2024년부터 연방예산에서 직접 충당함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

37)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Standort Deutschland stärken, Arbeitsplätze sichern und Verbraucher entlasten: Bundesregierung beschließt Maßnahmen für niedrigere Energiepreise," 보도자료, 2025. 9. 3.,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09/20250903-standort-deutschland-staerken-arbeitsplaetze-sichern-und-verbraucher-entlasten.html, 검색일자: 2025. 9. 8.
독일 연방정부, "Niedrigere Netzentgelte für Strom," 2025. 9. 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niedrigere-netzentgelte-2382396, 검색일자: 2025. 9. 8.

38) Energiewirtschaftsgesetz, Energie- und Stromsteuer-Gesetz

39) 독일 연방 재무부, "Formulierungshilfe für einen Änderungsan-trag der Fraktionen der SPD, von Bündnis 90/DIE GRÜNEN und der FDP; 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und zum Bürokratieabbau im Strom- und Energiesteuerrecht," 2024.

40) 일반적인 국가 업무(allgemeine Staatsaufgaben)를 위해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상당수의 프로그램이나 조치가 안정성장법 제12조에서 정의하는 민간 기업과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Finanzhilfen)의 성격을 띠는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보고서에 포함

41)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den 30. Subventionsbericht," 보도자료, 2025. 9.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9/2025-09-10-30-subventionsbericht.html, 검색일자: 2025. 9. 15.
독일 연방 재무부, "30.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 2026," 2025.

표 4 독일 연방정부 보조금 규모 상위 10개 프로그램(2026년 기준)

(단위: 백만유로)

구분	재정지원 프로그램	2026(목표)	2025(목표)	2024(실적)
1	전기요금 경감 보조	17,200	17,200	18,489
2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12,065	15,321	14,117
3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지원	5,000	2,900	587
4	전력 다소비 기업 전기세 상승 보전	3,000	2,850	2,398
5	사회주택 건설	2,653	2,028	1,656
6	유럽공동프로젝트 IPCEI 수소	2,388	1,577	1,213
7	광대역망 확대 지원	2,255	2,929	1,224
8	충전소 및 수소·전기 인프라 구축	1,714	1,575	346
9	지역 열망 전환	1,398	979	127
10	산업 에너지·자원 효율성 지원	973	918	555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30.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 2026," 2025, p. 19 Übersicht 1 토대로 작성

◆ 독일 연방정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정안(Steueränderungsgesetz) 승인 발표(2025. 9. 10.)[42]

● 연방정부는 2025 세제개정안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

– 지난 5월 새 연립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가 주요 정책 방향에서 언급된 '세제개편 및 재정건전화' 과제를 법제화하는 단계

▶ (통근 지원금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1km당 공제금액을 38센트로 인상

* 기존에는 1km~20km 30센트, 21km 이상 38센트 공제

▶ (요식업 서비스 부가가치세 인하) 음료를 제외한 식품 판매 서비스의 부가세율을 2026년부터 기존 19%에서 7%로 인하

▶ (농업·임업용 경유세 환급) 농가의 안정성과 지역 고용유지 효과를 위해 농업·임업용 경유세에서 일부 부과하던 에너지세 전액 환급을 재도입

* 에너지세: 휘발유 65.45센트/L, 경유 47.04센트/L, 난방용 경유 6.14센트/L

42) 독일 연방 재무부, 보도자료, "Bürgerinnen und Bürger gezielt entlasten – steuerliche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2025. 9.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9/2025-09-10-steueraenderungsgesetz-2025.html, 검색일자: 2025. 9. 19.
독일 연방정부, "Höhere Pendlerpauschale, weniger Umsatzsteuer in Gastronomie," 2025. 9. 1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kanzleramt/steueraenderungsgesetz-kabinett-2383684, 검색일자: 2025. 9. 19.

프랑스

◆ 프랑스 하원,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 부결(2025. 9. 8.)[43]

- 2024년 말부터 긴축재정 기조를 담은 예산안 추진이 내각 신임과 결부되어 여러 차례 하원에서 당대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제기됨
- 바이루 전 총리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예산안의 재정 긴축 방안을 사전 발표하였고, 헌법 제49조1항*을 발동하여 의회와의 합의 도출을 시도

  * 프랑스 헌법 제49조1항은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운영계획 또는 일반정책 성명에 대하여 하원에 내각 신임투표를 부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44] 내각은 가결 시 유지 및 부결 시 총사퇴[45]

– 바이루 전 총리는 지출 절감 및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다년간 재정 계획을 2025년 7월 15일에 발표했으며, 해당 계획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향후 긴축 방안을 제시[46]

– 긴축 방안을 담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자, 바이루 전 총리는 의회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헌법 제49조1항에 의거한 내각 신임투표를 하원에 요청

- 총리는 2025년 9월 8일에 임시 회기로 하원 의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였고 해당 일자에 2026년 예산안 추진 관련 일반정책성명을 발표[47]하며 헌법 제49조1항 발동

– 총리는 일반정책성명에서 국가적 핵심 과제로서 부채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2029년까지 재정적자 3% 이하 달성을 목표하는 내용을 주로 언급

- 하원 신임 투표 결과, 총 558표 중 기권 15표, 신임 찬성 194표, 반대 364표로 부결되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2025년 9월 9일 사퇴*[48]

  * 헌법 제50조[49]에 따라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제5공화국 출범 이래 해당 조항 신임투표로 내각이 총사퇴한 것은 이번이 최초임

---

43) 프랑스 하원, "Vote de confiance : l'Assemblée nationale a désapprouvé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u Gouvernement," 2025. 9. 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vote-de-confiance-l-assemblee-nationale-a-desapprouv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u-gouvernement, 검색일자: 2025. 9. 9.

44)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2024. 3. 8.,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8123&AST_SEQ=105, 검색일자: 2025. 8. 27.

45) 프랑스 상원 방송국(Public Sénat), "Vote de confiance: que prévoit l'article49-1 dégainé par François Bayrou?," 2025. 8. 26., https://www.publicsenat.fr/actualites/parlementaire/vote-de-confiance-que-prevoit-larticle-49-1-degaine-par-francois-bayrou, 검색일자: 2025. 8. 27.

46)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발표한 다년간 재정 계획은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5), 2025년 7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8. 8., p. 3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206

47) 프랑스 정부,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 l'intervention du Premier ministre François Bayrou," 2025. 9. 8., https://www.info.gouv.fr/actualite/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suivez-en-direct-l-intervention-du-premier-ministre-francois-bayrou, 검색일자: 2025. 9. 9.

48) 프랑스 정부 포털 사이트(vie-publique), "Vote de confiance : le gouvernement de François Bayrou a démissionné," https://www.vie-publique.fr/en-bref/300056-lassemblee-nationale-ne-vote-pas-la-confiance-au-gouvernement-bayrou, 검색일자: 2025. 9. 22.

49)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운영계획 또는 일반 정책 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

-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재직중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M. Sébastien Lecornu)를 2025년 9월 9일에 새로운 총리로 임명[50]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2025. 9. 12.)[51]

- (주요 내용) 피치는 프랑스의 경우 정치적 분열과 재정 구조의 한계 등을 사유로 재정 건전성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하여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
  - (정치 상황) 프랑스는 2024년 중반 경 치룬 조기 총선 이후 세 차례의 내각 교체를 겪는 등 국내 정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약화되었다고 평가
  - (구조적 한계)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45.6%임에 따라 추가 증세 여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지난 10년간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복지 지출을 억제하려 하였던 과거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반대에 직면하였음을 지적
- (전망)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의 가능성이 더욱 제한될 것이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영국

◆ 영국 국가감사원(NAO), '서비스 비용 정보 개선을 통한 정부 생산성 제고' 보고서 발표(2025. 9. 15.)[52) 53)]

- (주요 내용) 정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이 정부의 생산성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일부 정부 부처는 개별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
  - 비용 정보의 부족은 정부의 생산성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
  - 과거 부처별 비용 정보 개선을 위한 시도는 접근 방식의 일관성 부족과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 성과에 그침

50) 엘리제 궁(Élysé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nommé Sébastien Lecornu Premier ministre," 2025. 9. 9.,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5/09/09/le-president-de-la-republique-a-nomme-sebastien-lecornu-premier-ministre, 검색일자: 2025. 9. 22.

51) 피치(Fitch), "Fitch Downgrades France to 'A+'; Outlook Stable,"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downgrades-france-to-a-outlook-stable-12-09-2025, 검색일자: 2025. 9. 16.

52) National Audit Office, Improving government's productivity through better cost information, 2025; National Audit Office, "Improving government's productivity through better cost information," Report – Value for money, 2025. 9. 15., https://www.nao.org.uk/reports/improving-governments-productivity-through-better-cost-information/, 검색일자: 2025. 9. 22.

5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KIPF 재정동향』을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list.do)

- 부처별 서비스 비용 정보의 품질과 활용에 대한 개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

● (결론) 공공기관은 정부 생산성 향상, 재정 압박 대응, 공공서비스 성과 개선을 위해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비용 정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함

● (권고사항) 재무부 및 정부 재무기능 조직(Government Finance Function), 상임 차관 및 부처 고위 간부, 각 부처, 부처별 재무기능 조직에 대해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

- 재무부 및 정부 재무기능 조직은 실무 지원 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세스·활동 단위 비용 계산의 원칙을 정부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상임 차관 및 부처 고위 간부는 업무 처리나 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새로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 각 부처는 모든 주요 서비스의 범위와 경계를 정의하고, 각 서비스별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고위 책임자를 지정하여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운영 단계에서 서비스 비용을 이해·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처별 재무기능 조직은 비용 발생 요인을 이해하고, 비용 절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야 하며, '빠른 성과'(quick wins)를 낼 수 있는 작은 개선 과제를 통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개선 활동의 동력을 유지해야 함

호주

◆ 호주 의회예산처(PBO), 2025-26회계연도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2025. 9. 18.)[54]

● (개요) 동 보고서는 의회예산처가 정부의 2025-26회계연도 예산을 기반으로 향후 10년(중기) 및 2068-69회계연도까지(장기)의 독립적 재정 전망을 제시

- 채무, 재정수지, 수입/지출 비율 등 재정지표 전망 제시, 시나리오별 위험요인 분석, 수입/지출의 장기 추세 분석, 장기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내용 포함

● (중기 재정 전망) GDP 대비 총채무 및 현금수지는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채무는 2025-26회계연도에 35.5%에서 2035-36회계연도에는 31.8%로 점진적 하락 전망
- GDP 대비 현금수지는 2025-26회계연도 -1.5%에서 2035-36회계연도에 -0.1%로 개선되나 흑자전환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

54) 호주 의회예산처, "2025-26 Medium-Term Budget Outlook: Beyond the Budget," 2025. 9. 18., https://www.pbo.gov.au/publications-and-data/publications/2025-26-Medium-term-budget-outlook, 검색일자: 2025. 9. 22.

- 이자 비용은 동 기간 GDP 대비 1.1%에서 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차입 규모 증가 및 금리 인상의 영향에 기인
- (수입) GDP 대비 총수입은 2025-26회계연도 26.1%에서 2035-36회계연도 27.4%로 증가 전망
- (지출) GDP 대비 총지출은 중기 기간 동안 약 2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전 전망보고서보다는 전망치가 높아져 재정부담이 증가
- (장기 지속가능성) 다양한 시나리오[55]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호주 재정은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국

◆ 상무부 포함 중국 9개 부처, 서비스 소비 확대 조치 발표(2025. 9. 5.)[56]

- 서비스 소비 촉진 플랫폼 육성, 고품질 서비스 공급, 신규 서비스 소비 자극, 재정지원 강화, 통계적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5개 방면에서 19개 조치 제시
- (문화관광 소비보조금 지급) 문화관광 소비 진흥 목적으로 선정된 「100개 도시 100개 구(百城百区)」를 대상으로, 2025년 9월 중 3억 3천만위안[57] 규모의 소비보조금 지급 완료[58]
- (서비스업 기업체 대출 보조) 요식 및 숙박, 의료 등을 포함하는 8개 소비 부문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 1%p의 이자를 업체당 최대 100만위안까지 지원[59]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및 지급이 완료된 소비자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고정자산 대출과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운영 자금 대출이 대상
- (개인 소비 대출 보조)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3개 은행 및 소비자 금융회사를 통해 발행된 개인 소비 목적 대출에 대해 금융이자보조금 지급[60]

55) 자세한 시나리오별 분석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

56)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商务部等9部门印发《关于扩大服务消费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2025. 9. 5.,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9/content_7040952.htm, 검색일자: 2025. 9. 22.

57) 2025. 9. 24. 고시 환율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196원

58) 중국 CCTV, 「发放超3.3亿元消费补贴 文化和旅游部推出多项消费便利措施」, 2025. 9. 18., https://news.cctv.com/2025/09/18/ARTID6eKrjZurGTVja6RbjYW250918.shtml, 검색일자: 2025. 9. 22.

59) 신화통신(新华网), 「九部门：8类符合条件的服务业经营主体贷款可享贴息」, 2025. 8. 12., http://www.xinhuanet.com/20250812/23823d5dbe9244d693d2b1b368d4f133/c.html, 검색일자: 2025. 9. 22.

60) 시나재경(新浪财经), 「9月起，这些个人消费贷款可享受财政贴息」, 2025. 8. 13., https://finance.sina.com.cn/roll/2025-08-13/doc-infkuazr8486217.shtml?froms=ggmp, 검색일자: 2025. 9. 22.

- 단일 소비 지출액이 5만위안 미만이거나, 5만위안 이상의 자동차, 노인 돌봄 및 출산, 교육 및 훈련, 문화·관광, 가구, 전자제품, 의료 분야의 소비에 사용된 대출에 적용

▶ 단, 5만위안 이상의 지출의 경우 5만위안까지의 이자액만 보조

- 적격 개인소비자금 대출 원금 중 실제 소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p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며, 계약 이자율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

● (시범도시 건설) 서비스 소비 촉진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 및 시나리오를 위한 시범도시 육성

- 경쟁 심사를 통해 인구가 많고 발전 잠재력이 큰 시범도시 50여곳을 선정할 예정[61]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육아보조금 지급 개시 (2025. 9. 9.)[62]

● (의의) 중국 건국 이후 최초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대규모의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현금 생계 보장 보조금

● (대상 및 지급액) 2025년 1월 1일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만 3세 미만 영유아가 3세가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연간 3,600위안 지급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세를 앞둔 2022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잔여 개월에 따라 월 300위안 수준에서 차등 지급[63]

- 각 성에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정하여 해당 시기에 전액 지급을 보장하며, 신청자 또는 영유아의 카드 또는 기타 금융 계좌를 통해 지급[64]

- 육아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며, 최저생계보장 및 특별곤란 지원 수급자 결정 시 평가 대상 소득에서 제외

● (재원조달) 중앙정부 이전지출 사업으로 약 900억 위안 규모의 '보육지원금 기금(育儿补贴补助资金)'을 조성하며, 중앙정부가 약 90%, 지방정부가 나머지를 부담[65]

61) 중국 CCTV, 「商务部：将在约50城开展消费新业态、新模式、新场景试点建设」, 2025. 9. 17., https://news.cctv.com/2025/09/17/ARTIYMW3qNQiaW5CnUg19CVu250917.shtml, 검색일자: 2025. 9. 22.

62)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育儿补贴申领正式全面开放」, 2025. 9. 9., https://www.gov.cn/lianbo/bumen/202509/content_7039703.htm, 검색일자: 2025. 9. 22.

63) 중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对照表来了！来查查你家娃能领多少育儿补贴→」, 2025. 7. 28., https://www.gov.cn/zhengce/202507/content_7034151.htm, 검색일자: 2025. 9. 23.

64) 인민일보(人民网),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育儿补贴制度实施方案》」, 2025. 7. 28., http://politics.people.com.cn/n1/2025/0728/c1001-40531286.html, 검색일자: 2025. 9. 23.

65) 인민일보 해외판(人民日报海外版), 「标准如何设定、补贴对象有谁、资金如何保障-育儿补贴制度详解来了(大健康观察)」, 2025. 8. 1., https://paper.people.com.cn/rmrbhwb/pc/content/202508/01/content_30092331.html, 검색일자: 2025. 9. 23.

스웨덴

예산·결산 등

◆ 스웨덴 재무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 9. 22.)[66]

- (재정) 상대적으로 느린 세수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스웨덴 국방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경제회복 조치 등으로 인해 일반정부 순차입금 및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8년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그 이후 모두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예산 기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① 근로소득 강화, ② 근로 기반 강화 및 소외 악순환 끊기, ③ 의료 및 사회복지 투자 및 치안 강화에 우선순위를 둠
- (총지출) 2026년 총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은 2025년 대비 380억크로나 증가한 1조 8,940억크로나로 예상

표 5 주요 재정 변수 전망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입[1]	1,273	1,315	1,375	1,408	1,506
조세수입	1,331	1,353	1,420	1,474	1,587
정부사업수입	48	51	51	51	51
자산매각수입	1	5	5	5	5
융자회수	0	1	0	1	1
귀속소득	22	25	24	25	23
EU 보조금	16	33	36	15	13
조세시스템 관련 상계	-146	-152	-161	-162	-173
세입계정에 대변항목으로 분류된 지출	0	0	0	0	0
지출	1,365	1,425	1,543	1,566	1,563
지출한도[2](국가채무 이자 비용 제외)	1,319	1,394	1,502	1,527	1,512
국가채무 이자 비용	45	31	25	32	43
순융자	-2	1	17	29	27
현금조정	14	0	-2	0	0
중앙정부 재정수지	-104	-111	-167	-181	-76

주 스웨덴 중앙정부 기준 재정 전망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수입 타입 1000-8000의 합계
2) 27개 분야별 지출 중 국가채무 이자비용인 26번째 분야를 제외한 금액

출처 스웨덴 재무부 홈페이지, "Statens budget i siffror,"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statens-budget-i-siffror/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5. 9. 23.

66) 스웨덴 정부, 2026년 예산안 "Budgetpropositionen för 2026," 2025. 9. 23.,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5/09/2025261/

표 6 2026년도 스웨덴 예산안 총지출 상한(takbegränsade utgifter)

(단위: 십억크로나,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의회가 승인한 총지출 상한[1)]	1,747	1,856	1,894	1,938	2,077
정부가 제안한 총지출 상한	–	–	1,936	2,009	2,105
GDP 대비 총지출 상한 비율(%)	27.3	28.4	28.1	27.8	28.1
잠재GDP 대비 총지출 상한 비율(%)	27.3	27.8	27.8	27.8	28.1
예산 마진(budgeting margin)	61	77	41	73	168
총지출 상한 대비 예산 마진(%)	3.6	4.3	2.1	3.8	8.7
GDP 대비 예산마진 비율(%)	1.0	1.2	0.6	1.0	2.2
GDP 대비 재정수지(%)	−1.5	−1.4	−2.4	−1.8	−0.6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0.5	−0.4	−1.8	−1.6	−0.6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	49.3	49.4	49.4	48.9	48.3

주 1) 2025년 봄 춘계재정정책법안 총지출상한

출처 스웨덴 정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6, Tabell 5.4 Utgiftstak och takbegränsade utgifter, p. 85, 2025. 9. 18.

표 7 2026년 스웨덴 예산안 분야별 지출한도

(단위: 백만크로나)

구분	실적		예산	전망		
	2024년	2025년[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 거버넌스	19,024	20,172	20,185	21,614	21,212	21,331
2. 경제 및 금융행정	20,824	21,977	21,705	22,039	22,091	22,611
3. 국세 및 관세, 세무행정	16,924	14,847	14,737	15,512	15,851	16,140
4. 사법	78,298	87,390	86,237	94,744	103,673	108,001
5. 국제협력	2,321	2,830	2,810	2,547	2,333	2,326
6. 국방 및 국가비상사태 대비	128,177	168,818	168,286	225,022	234,025	207,201
7. 국제개발협력	49,604	44,738	45,814	43,653	43,764	44,072
8. 이민정책	11,765	11,938	11,622	13,524	13,112	13,093
9. 보건·의료·복지서비스	116,049	120,470	117,854	127,707	125,290	118,231
10.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	120,096	123,362	120,600	121,994	123,988	124,266
11. 노령연금	63,565	62,890	62,395	59,322	56,632	56,941
12. 가족 및 자녀양육	102,877	104,531	101,443	104,228	105,132	107,667
13. 양성평등 및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4,738	6,286	6,063	5,866	3,319	2,498
14. 노동시장 및 근로	88,531	97,055	92,857	91,163	88,140	87,523
15. 장학지원	28,039	33,982	30,766	35,788	36,265	37,023
16. 교육 및 대학연구	98,133	104,883	101,670	106,937	106,596	106,805
17. 문화·언론·종교·여가활동	16,621	16,916	16,876	17,337	17,108	16,765
18. 주택건설 공급 및 소비자정책	4,629	3,145	3,216	1,775	2,111	2,136
19. 지역개발	2,819	4,294	3,576	4,874	4,637	4,189
20. 환경 및 자연보호	14,587	16,479	17,482	19,625	18,773	17,392
21. 에너지	4,402	6,631	5,947	7,940	8,327	8,495
22. 교통 및 통신	81,216	95,127	92,180	106,705	110,953	120,896
23. 농림·축산·식품	21,554	21,834	21,726	22,567	22,936	20,023
24. 산업 및 무역	9,229	9,483	8,910	8,955	8,707	9,229
25. 지방정부 보조금	174,245	173,197	173,195	180,723	181,608	183,538
26. 국가채무 이자비용	45,198	28,755	30,598	26,955	32,155	42,655
27. EU부담금	41,187	47,762	46,137	54,200	57,708	62,097
분야별 지출한도	1,364,651	1,449,793	1,424,886	1,543,318	1,566,445	1,563,145

주 1) 2025년 추가 경정 예산 포함(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국영기업 APL 자본투자 지원, 우크라이나 방위 장비 추가 지원 등)

출처 스웨덴 정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6, Tabell 7.3 Utgiftsramar 2025–2028, p. 127, 2025. 9. 18.

표 8 스웨덴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1]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24Q1	2024Q2	2024Q3	2024Q4	2025Q1	2025Q2
GDP 성장률	0.8	-0.3	0.3	0.8	-0.2	0.5
가계 최종 소비	-0.6	-0.2	0.0	0.7	-0.2	0.4
일반 정부 소비	0.3	0.1	0.4	0.1	0.1	0.2
총고정자본형성[2]	0.2	-1.7	0.3	1.8	-3.8	1.7
수입	0.6	-0.6	1.7	-0.5	0.3	3.1
수출	-0.1	1.0	0.6	0.7	1.8	0.7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출처 스웨덴 통계청, "GDP de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2025," 2025. 8. 29., GDP – Expenditure approach 및 National Accounts, quarterly and annual estimates를 참고하여 재구성.

기타

◆ 스웨덴 통계청, 2025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5. 8. 29.)[67]

- 스웨덴의 2025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및 가계소비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0.5% 증가

◆ 스웨덴 국방부 및 외교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억 크로나 규모의 제20차 군사지원 패키지 발표(2025. 9. 11.)[68]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총 1,208억크로나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2025년 9월 11일 기준)[69]
- 이번 제20차 군사지원 패키지는 2025년 9월에 발표한 가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금을 조달
- 스웨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20차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여 90억크로나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스웨덴 중앙은행, 정책금리 1.75%로 0.25%p 인하 (2025. 9. 23.)[70]

- (배경)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을 더욱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목표치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
- (전망) 물가상승률과 경제 전망이 유지될 경우 향후 정책금리는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예상
- (위험요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잔존

67) 스웨덴 통계청, "GDP in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2025," 2025. 8. 29.,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statistical-news/national-accounts-second-quarter-2025/

68) 스웨덴 정부, "Nytt stödpaket till Ukraina för över 9 miljarder," 2025. 9. 1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todpaket-till-ukraina-for-over-9-miljarder/, 검색일자: 2025. 9. 23.

69) 스웨덴 정부, "Sveriges stöd till Ukraina," https://www.regeringen.se/regeringens-politik/sveriges-stod-till-ukraina/, 검색일자: 2025. 9. 23.

70)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till 1,75 procent," 2025. 9. 23.,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sanks-till-175-procent/, 검색일자: 2025. 9. 24.

표 9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2월	5월	6월	9월
기준금리	4.00	4.00	3.75	3.75	3.50	3.25	2.75	2.50	2.25	2.25	2.00	1.75
변동폭(%p)	0.00	0.00	−0.25	0.00	−0.25	−0.25	−0.50	−0.25	−0.25	0.00	−0.25	−0.25

출처 스웨덴 중앙은행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12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52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10월 20일 발행 | 제352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10